HOMO MIGRANS

Vol.07

2013

FEB.

| 특집: 역사 속의 이주, 이주 속의 역사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 Studies

Homo Migrans :
Journal of Migration & Ethnic Studies
Vol.7 (Feb 2013)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

2013년 2월
ISSN: 2093-3061

<포룸>
마흐두드의 다문화주의: 집단 본질주의 비판에 대한 응답 —— 오 승 은 5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 박 현 숙 11

<역사 속의 이주, 이주 속의 역사>
로마제국의 이산(diaspora) 유대인 —— 김 경 현 23

<논문>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 계급과 인종 사이 —— 신 동 규 36

<지금, 여기>
2012년 미국 오바마 정부, "불법" 외국인의 자녀들, 그리고 드림법안
(The Dream Act,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현재 —— 권 은 혜 55
알제리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전쟁 —— 이 재 원 59
"성실 근로" 이주노동자? —— 이 태 정 66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Journal of Migration & Ethnic Studies

Feb. 2013
ISSN: 2093-3061

<Forum>

Mohdood and Multiculturalism: A Response to the Criticism of Group Essentialism — Seung Eun Oh 5

Will Kymlicka and Liberal Multiculturalism — Hyun Suk Park 29

<Migration in History, History in Migration>

Roman Empire and Jewish Diaspora — Kyung Hyun Kim 37

<Article >

Between Class and Race: Migrant Workers in French Automobile Industry in 1980s and Neo-Racism — Dong Gyu Shin 65

<Here and Now>

The Dream Act, Children of "Illegal Migrants" and Obaba Government in 2012 — Eun Hye Kwon 55

Memories of Algerian War and Memory Politics in France — Jae Won Lee 59

"Sungshil Geunro"(hard working) Migrant Workers? and Korea – Tae Jung Lee 66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 Studies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5-10

■ 포룸 ■

마흐두드의 다문화주의: 집단 본질주의 비판에 대한 응답

오 승 은

I. 집단 정체성과 본질주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받는 여러 비판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특정 문화 집단의 일원으로만 봐 그 집단 정체성 속에 가둬 버린다는, '에쓰닉 상자'(ethnic box) 현상일 것이다.[1]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다문화주의의 수혜자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소수집단 구성원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주류 정치인들의 다문화주의 공격과는 다른 무게를 지닌다. 소수자 출신의 다문화주의 비판자, 일종의 '내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케난 말릭과 같은 이들의 비판 요지는 결국 집단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이해 방식이란 집단 성원이라면 어떤 공유된 본질적 특성, 본질(essence)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각 집단 간에는 경계가 명확히 그어져 있으며, 이름이 붙여져 있고, 각기 균질한 그리고 서로 섞이지 않는 소수 집단의 단일 문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일한 여러 개의 조각들이 모여 모자이크처럼 구성된 것이 다문화사회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 마흐두드는 문제는 본질주의이지 다문화주의

1) 대표적인 예로 영국 출신의 지식인 저널리스크 케난 말릭을 들 수 있다. Kenan Malik and Fero Sebej, "Multiculturalism at Its limits: Managing Diversity in the new Europe?", *Eurozine*, http://www.eurozine.com/articles/2011-01-18-debate-en.html.(검색일 2012,11,01).

자체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같은 소수자 집단 출신이면서도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마흐두드는 자신의 저작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5장<Multiculturalism and Essentialism>에서 본질주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체가 없는 집단정체성 현상을 본질주의적으로 '마치 물건이 실제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 마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이상의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자연의 사실인 것처럼 인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정한다.[2] 본질주의적 접근방식으로는 민족과 같은 집단 정체성이 다층위적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본질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다문화주의를 허구로만 보고 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反)본질주의도 역시 문제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다문화주의의 '문화'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성된 것이라고 해서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 자체야말로 또 다른 본질주의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주의 방식이나 반본질주의 방식 그 어느 것도 민족과 같은 집단 정체성이 다층위적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흐두드에 따르면 다문화주의 정치를 부상시킨 것은 특정 민족 집단이 언어, 종교,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 구조, 권력 관계, 손익 계산과 결정 등이 이런 문화적 속성과 다층위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행위자성(agency)이라는 것은 외부적/객관적 조건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 규범과 민족적 정체성의 작용만으로도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다. 가장 손쉽게 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재원은 결국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이기 때문에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 문화적 재원이 그 자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경제 사회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작동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마흐두드는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영국에서 나타났던 남아시아 사람들의 자영업 붐을 지적한다. 영국 경제가 불경기로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자, 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은 동네 구멍가게나 택시 운영 등의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이때 민족 집단 내에서의 관계, 자금 정보, 대출 등 집단 내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3]

---

2) Tariq Modood,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Polity, 2007, 111.

3) *Ibid.*, 100.

남아시아 공동체라는 문화적 요소와 불황이라는 외부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는 실질적 경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다른 소수민 집단과는 구별되는 남아시아인들만의 대처 방식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II. 집단주의(groupism)을 넘어서

마흐두드의 소수집단 문화에 대한 비본질주의적 접근방식은 집단 정체성 문제에 내재된 집단주의(groupism) 혹은 집단 본질주의를 비판한 브루바커(Rogers Brubaker)의 논지에 많이 기대어 있다.[4] 집단주의란 브루바커에 따르면, 경계가 나뉘어져있는(bounded) 각기 다른 집단들이 사회생활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사회갈등의 주요 행위자이고, 사회분석의 근본적 단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계급, 에쓰닉 집단(ethnicity), 젠더, 다문화주의 등을 분석하고 연구함에 있어 '집단'group과 '집단성'(groupness)을 기본적이고 불가결한 개념으로 당연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에쓰닉 집단, 민족, 인종을 실체가 있는 독립체로 보게 되고, 이들이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행위자성을 발휘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집단주의 관점에서 보면, 구(舊)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 무슬림이나, 북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들과 신교도 등은 모두 내적으로는 동질적이면서 외적으로는 경계가 나눠져 있는 존재들로 인식되며, 심지어 공동의 목적을 가진 통합된 집단 행위자들로 물화(reification)시켜 보게 된다.

집단을 결국 단일한 개인의 확대판(groupist individual)으로 보는 집단주의는 여러 관점에서 공격 받아왔었다. 게임이론 관점에서는 집단주의 보다는 개인주의적 접근 방법을 더 중시하였고,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관계를 더 중시하였고, 포스트-모던 이론에서는 집단을 파편적이고 일시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고정되고 분명한 경계는 계속 침식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집단을 보는 시각이 본질주의에서 구성주의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

4) Rogers Brubaker, *Ethnicity without Group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1장 "Ethnicity without Groups."

그러나 유독 '에쓰닉, 인종, 민족 갈등'의 경우 이러한 집단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에쓰닉 갈등(ethnic conflict)은 '특정 에쓰닉 집단 대 다른 특정 집단의 투쟁'으로, 인종 갈등(racial conflict)을 '한 인종 집단 대 다른 인종 집단의 투쟁'으로 보는 경향이 지속되어왔다. 정치적 지도자들과 당사자들이 에쓰닉 갈등을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집단 대 집단의 갈등으로 정의하고 그렇게 형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 심지어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을 실행한다고 하는 연구자들조차도 그런 민족주의적 정치 물화프로젝트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브루바커의 주장이다.

에쓰닉 정체성(Ethnicity) 다시 생각하기

연구자들이 집단 정체성을 물화시키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은 기존의 연구 경향을 다시 재고하게 만든다. 물론 에쓰닉 집단(ethnicity), 인종, 민족을 재고한다고 해서 이들이 차지하는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중요성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집단 범주가 가진 현실, 권력, 중요성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보자는 것이다. 인종의 현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인종의 존재를 당연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집단 정체성을 마치 실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물화를 강화시키는 관행을 탈피해보자는 것이다.

브루바커가 제안하는 새로운 연구 방향이란 에쓰닉 집단(ethnicity)과 같은 집단성을 역동적이고 끝없이 발생하는 사건이자 과정으로써, 또한 프로젝트로써 접근하는 것이다. 실질적 독립체가 아닌 상황의 지배를 받는 특정 행동(situated-action)으로, 문화적 특징으로, 인식론적 틀로, 담론 틀로, 제도로, 정치 프로젝트로, 우연적 사건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체를 가진 고정불변의 상수가 아닌 맥락에 따라 변동을 거듭하는 개념적 변수로 인식하고 이를 기본 분석단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에쓰닉 집단・인종 등의 집단성(groupness)은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볼 수 있다. 집단성을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닌 우연적 변수로 본다면, 특정 집단이 보여주는 일치감과 단결심을 내재적 특성이 지속되는 불변의 과정이 아닌 일시적 사건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으로 봤을 때야 비로소 왜 어떤 민족 동원정책은 성공하는 반면 또 다른 에쓰닉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는지를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 만들기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성을 변수로 보고, 집단을 고정불변의 속성이 아닌 범주로 고찰한다면, 집단 만들기를 일종의 사회, 문화, 정치적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에쓰닉・인종・민족이라는 범주를 실존하는 집단으로 만들고, 집단성을 끌어내고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최악의 정치(politique du pire), 즉 짧은 기간 내에 일부러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 민족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지지를 끌어내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벌이는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구(舊)유고슬라비아의 민족청소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에쓰닉 문제의 틀을 해석틀로 삼지 않는 것이다. 에쓰닉 갈등(ethnic conflict)이 특정 에쓰닉 집단 대 또 다른 집단의 대립으로 자꾸 비쳐지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에쓰닉 갈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에쓰닉 프레임, 에쓰닉 코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에쓰닉 문제를 단순히 에쓰닉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에쓰닉한 문제로 재구성하는 적극적 참여 행위가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에쓰닉'이라는 라벨을 부치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의 사회적 구성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자, 언론인, 정책 입안자등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에쓰닉(ethnic)/민족(national)이라는 틀로 짜지 말고, 살인, 전쟁 지배권, 기회주의적 약탈과 암시장 부당이득 등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 갈등, 폭력 등에 있어서 조직화의 중요성,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민족 지도자들의 민족 이름을 내건 발언과 행동의 모호한 성격 등을 비판적으로 꿰뚫어 보고 이해관계로 해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민족 정치의 수사학이 갖는 수행 성격(performative), 즉 그 말을 함으로써 실제가 되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이들 집단주의적 언표를 실제 집단성으로 또 민족적 언표의 대상으로

추정되는 집단을 세상의 실제하는 실체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로 먹고 살며 정치를 위해 사는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이것이 같은 민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고 분기되는 지점을 인식함으로써, 지도자들의 신념, 욕구, 민족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넷째, 문제는 '존재' 혹은 '실체'가 아닌 '관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에쓰닉, 인종, 민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재현하는 방식이다. 그 자체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점이다. 사물을 보는 눈, 해석하는 것, 추론하는 것, 기억하는 것 등은 이미 많이 에쓰닉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에쓰닉화 된 틀과 내러티브를 적용한다면, 이는 이미 과도하게 에쓰닉화 된 인식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단순히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언제 사람들이 스스로를 집단과 동일시하고 타자를 인식하는지 세상을 경험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인종・에쓰닉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또한 에쓰닉 갈등을 변수와 우연 요소, 집단성의 증가와 쇠퇴라는 입장에서 관찰하게 되면, 집단성이라는 것은 항상 최고 상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집단성의 부침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브루바커의 이러한 제안은 아직은 원론적 차원에 머무르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특히 인종이나 민족 등의 '집단'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문제가 생기면 과도하게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틀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들 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세력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narodna21@hanmail.net

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11-22

■ 포룸 ■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박 현 숙

윌 킴리카는 캐나타 온타리오주의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 정치이론가 중 한 사람이다. 킴리카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문제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시민권과 사회 정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킴리카는 현재까지 8권의 단행본과 200여편의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그의 저작은 32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다양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킴리카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1989)』,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1990)』, 『정치철학에서의 정의(*Justice in Political philosophy*, 1992)』,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 1995)』, 공저, 『다양한 사회에서의 시민권(*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2000』, 『자국어로 본 정치학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2001)』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저서인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는 영어 사용권 국가에서 다문화주의에 관한 정치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책으로 권리와 시민권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특정한 여건에서 집단의 권리의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자유주의 사상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저서로 평가받았다.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은 자유주의자들이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공통된 시민권 개념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다문화적 상황이 만들어진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통적 시민권 개념이 실패한 이유와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한계에 봉착한 이유를 지적하고 있

다. 이 책에서 킴리카는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민족 갈등의 해결책으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와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은 정치적 다문화주의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인용되고 논의되는 저서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저서인 『자국어로 본 정치학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은 18편의 논문 모음집으로, 18편의 논문에서 킴리카는 자신의 주장을 "자유주의적 문화주의"라고 칭하는 이유와 민족적 소수자(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다른 자유사회에서의 문화집단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자신의 저서에 대한 비판가들의 지적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킴리카는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연방주의, 토착민의 권리와 환경적 정의, 인종 관계, 소수자 우대 특권, 시민 교육, 세계화와 국제적 민주주의 등)를 논의하고 있다. 이중 두 권의 저서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와 *Multicultural Citizenship*은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2005) 와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 (서울: 동명사, 2010)으로 각각 번역되었다. 또한 올해 11월 30일 고려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다문화주의, 동·서 석학에게 묻다"라는 제목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강연을 한 바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본 연구노트는 정치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가 비전공자의 눈높이에서 킴리카의 다문화주의를 소개하기 위한 글이다. 킴리카가 주장하는 다문화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의 저서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1)]

킴리카는 다인종국가에서 국민 만들기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자들-특히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민족적으로-이 국민 만들기 과정 속에 사회의 주류와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민족적 정체성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다문화주의를 주

1) Will Kymlicka지음, 책임번역 장동진, 공동번역, 장휘, 우정열, 백성욱,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서울: 동명사, 2005), 455-520.

창하였다. 서구 자유주의 국가에서 최근까지는 '선의의 무관심(benign neglect)'을 내세워 그러한 인종, 문화적 차이점을 국가가 정책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중립적 국가관이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인종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가 필요하며 시민권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는 심원한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의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주장하는 정상적 시민의 모델이나 시민권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정상적 시민모델의 개념은 장애가 없고 이성애자인 백인 남성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상성 모델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배제, 주변화, 침묵화 또는 동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더 이상 침묵하거나 주변적 존재로 취급되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또한 '권리로서의 시민권' 모델의 목표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권리로서의 시민권' 모델은 토마스 마샬(Thomas H. Marshall)이 주장한 것으로 공동으로 설정된 사회적 권리가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국민문화로 통합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적 권리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공적 제도를 통해 일종의 공통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통상 공통의 공적 제도는 공통의 민족 언어를 통해 작동되는데, 사회적 권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공통의 민족정체성을 형성시키려는 목적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공동의 시민권리와 국민통합의 문제점은 흑인, 여성, 토착민, 인종 및 종교적 소수자, 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공동의 시민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와 사회적 냉대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들의 사회 경제적 신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즉 이들의 차이(difference)에 의해서도 사회적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경제의 위계 외에 존재하는 신분의 위계 구조로 인해, 영국의 경우 아일랜드인보다는 영국인이, 구교도보다는 신교도가, (그리고 유태인이나 이슬람교도보다는 기독

교도가 더 낫다) 더 낫다고 말하며, 흑인, 갈색인, 또는 황인보다는 백인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동성애자보다는 이성애자가, 장애자보다는 정상인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해석, 의사소통의 사회적 양식에 뿌리 내린 문화적 부정의(cultural injustices)를 찾아내서 비천하게 여겨진 집단의 손상된 정체성과 문화적 산물들을 상향적으로 재평가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인정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집단들은 '공동'의 국민문화로 통합하려는 그러한 발상 자체를 거부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다 확장된 국가(larger state) 내에서 별개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 언어와 문화로 운용되는 자신들만의 공적 제도를 가진 별개의 자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공동의 시민권리 대신 차별적 시민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러한 요구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지도자들이 집단구성원들의 분개와 불평등의 감정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속적 장악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이들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의 수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킴리카는 이러한 설명은 어느 정도는 진실이지만 왜 비엘리트 집단 구성원들도 종종 차별적 시민권에 대한 요구를 지지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킴리카는 인정의 정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과 다문화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유를 우선적으로 놓을 것인가 자율적 개인보다는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중시할 것인지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를 반대하였고, 다문화주의 옹호자들은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였고, 첫 번째 작업으로 소수자 권리를 개인적 권리를 제한하는 나쁜 소수자 권리와 개인적 권리를 보완해주는 좋은 소수자 권리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나쁜 소수자 권리를 킴리카는 내부 제재로 칭하면서 인종문화 집단이 집단의 유지를 명목

으로 국가 권력을 빌어 자신의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성을 강제적으로 가정에만 묶어 두거나, 종교적인 교조주의가 합법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신정정치 또는 가부장정치 문화의 이미지에 호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의 경우는 좋은 소수자 권리로 이는 외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킴리카는 이를 외부로부터의 보호라고 칭하였다. 외부로부터의 보호는 보다 확장된 사회의 결정의 영향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외부로부터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수자 권리가 집단 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둘째, 소수자 권리가 집단 간 평등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인정의 정치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킴리카는 인정의 정치를 적용할 대상을 크게 다섯 개의 모델로 나누었다. 소수민족, 이민자, 고립주의적 인종종교집단, 메틱(metic, 고대 그리스 도시의 외국인 거주자로 폴리스로부터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거주하면서, 그 곳에 머물기 위해 세금을 낸 사람들로 주변적 존재를 의미한다. 마이클 왈쩌는 고대 그리스의 용어를 빌려와서 이러한 집단을 metics라고 부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이들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인종문화집단의 독특한 정체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며, 이런 인종문화집단의 제 요구를 킴리카는 다문화주의라고 칭하였다. 이들이 대부분 소수자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리라는 용어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킴리카는 첫 번째 집단인 소수민족을 국가에 종속된 민족과 토착민으로 양분하였다. 소수민족은 확장된 국가 혹은 제국에 의해 과거에 정복당했거나 합병된 민족들이고, 토착민들은 그들의 전승된 토지가 이주자들에 의해 침략되어서, 강제적으로 혹은 조약을 통해서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국가에 편입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소수 민족과 토착민들은 전형적으로 국가의 국민 만들기에 저항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자 민족주의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소수자 민족주의를 억압하려고 노력해 왔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수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별개의 민족 정체성의 유지를 금지하였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의도는 종종 소수자들-특히 토

착민들-이 퇴보적이고 비문명화 되었기 때문이며, 보다 문명화되고 진보한 국가로 편입되는 것이(심지어 그것이 그들의 의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근거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수자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점진적으로 소수자 민족주의에 대한 억압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수백 년에 걸친 법적 차별 및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소수 민족들은 자신들의 개별적 민족을 형성하려는 의식과 민족적 자율성에 대한 소망을 유지하였고, 국가가 소수자들 고유한 민족성에 대한 의식을 공격하게 되면 불복종과 분리주의 운동의 위협이 증가한다는 점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의 체제는 소수 민족들의 충성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의 분리된 민족성의 의식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으로 선회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집단인 이민자에 대해 킴리카는 이민자 집단이란 용어는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민자들은 그들을 주류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다수자들의 국민 만들기 운동에 저항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그들이 다수자들의 언어로 운영되는 일반적 제도에 통합될 때 자신들의 인종적 유산의 다양한 측면의 유지를 허용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통합에 있어서 보다 관용적이거나 다문화주의적 접근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를 거부하였고, 1960년대까지 주요한 세 이민 국가는 모두 이민자들에게 앵글로 순응(Anglo-conformity)모델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정책을 취한 이유는 이들을 통합시킴으로써 충성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이 인종적이 된다고 하여도 비애국적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자유민주주의 정책자들은 이러한 동화주의 접근이 필요하지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집단은 고립주의적 인종종교 집단으로 후터교도, 아미쉬, 하시디즘파 유태인들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은 근대 세계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로부터 면제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군복무의 의무나 배심원이 될 의

무, 의무교육법으로부터도 면제되기를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자녀들이 부패된 영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들은 전체로서 국가에서 시민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투표나 재직할 권리를 행사하지도,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한 북미의 맥락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모두가 서부 국경에 정착시킬 이민자들을 필사적으로 찾을 때, 유용한 농경 기술을 갖고 있는 이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인정해왔지만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을 용인하는 것이 적실한지 불분명하다고 킴리카는 지적하였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년간에 걸쳐 이러한 면제들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긴 하였지만, 이러한 집단들이 집단 내부의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해를 끼치지 않는 한(예를 들어 아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 그리고 그들의 관점을 외부인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구성원들이 집단을 떠나는 것이 법적으로 자유로운 한, 그들을 계속해서 관용해 왔다는 것이다.

네 번째 집단은 메틱(metics)이라는 불법 이민자 집단으로,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왔거나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주지가 없는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멕시코인들과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인 같은 사람들, 임시 거주자-임시보호를 원하는 난민들이나 독일의 터키인들 같은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온 사람들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국할 때 미래의 시민으로 심지어는 장기 거주자로도 생각되지 않았지만, 전통적 이민 국가들은 원래 계약 기간을 넘어서 머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종종 영주권을 허용하였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의 사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은-특히 자신들은 이민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들-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이러한 요구에 저항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나 토대도 마련하지 않았고, 이들이 시민권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메틱들을 추방 혹은 자발적 귀환의 형식으로 국가를 떠나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메틱들은 하위문화를 발전시키게 되고, 그들의 2세들은 정치적 소외로 범죄를 저지르고,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종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폭력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심지어 비이민 국가라고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점

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마지막 집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이들은 메틱처럼 역사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배제 당하였다. 그들은 백인들만큼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이방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그들은 다수 문화의 제도로 통합되는 것을 금지 당하였고 국민성을 박탈당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흑인들은 민권 운동을 전개하였고 민권 운동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불균형적으로 경제적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 남겨져 있었고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배제의 결과로 흑인들은 분리주의적이고 적대적인 하위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하위문화를 허용했던 데 대한 대가로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빈곤하고 주변화 되고, 폭력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에 있어서도 인간적 잠재성을 낭비하고 인종적 갈등이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는데,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역사적 화해, 통합에 대한 특수한 보조(소수자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정치 대표에 대한 보장(흑인이 다수가 되는 지역으로 선거구 재조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흑인 자치기구들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역사적인 흑인 대학과 흑인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 보조금 지급) 등이 제시되었다. 장기적 목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미국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기존의 흑인 공동체들과 제도들이 강화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킴리카는 지적하고 있다.

다섯 가지 사례를 검토하면서 킴리카가 내린 결론은 국민 만들기 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메틱이나 인종적 카스트 집단처럼, 장기 거주를 하는 어떠한 집단도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배제당하지 않는다.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에는 국가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가볍게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주로 제도와 언어의 통합에만 연관되고, 그 밖의 어떤 특정한 관습들, 종교적 믿음 혹은 삶의 방식들에 대한 채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소수 민족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사회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

는 자신들 고유의 민족 만들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은 서구 민주주의에서 역사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용할 추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낙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메틱들에 대한 배제, 이민자들의 동화, 소수자 민족주의의 억압과 같은 이전의 정책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새로운 양상의 인종 관계들이 검증되고 있으며, 이전의 정책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킴리카는 다문화주의의 옹호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인종문화적 차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채택된 '차이를 불문하는 규칙들(difference-blind rules)'로부터의 이탈이 본질적으로 부정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차이를 불문하는 규칙들이 특정 그룹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의도 모든 사람을 위한 공통의 규칙들을 요구하든지 혹은 다양한 그룹에 대한 다른 규칙들을 요구하든지 간에, 특정한 맥락에서 사안별로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자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성을 부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정의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우리 사회가 '재분배의 정치'를 달성할 능력을 침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킴리카는 다문화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정가능성(revisibility)과 다원성(plurality)에 관한 자유주의적 전제들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는다.

다음은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논의는 타리크 마흐두드(Tariq Modood)가 자신의 저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A Civic Idea*)』에서 한 주장이다.[2] 타리크 마흐두드는 킴리카가 존 롤스(John Rawls)의 자유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틀에서 그의 사상을 발전시켰고 학문적인 자유주의적 이론을 정치의 관

2) Tariq Modood,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MA.: Polity Press, 2007), 21-35

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킴리카는 롤스식의 정치 이론의 중립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립성은 인종문화적 집단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하였는데, 마흐두드는 킴리카가 이 점을 올바르게 보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마흐두드가 킴리카의 이론에 동조하였지만 킴리카가 인종문화적인 집단에 대한 중립성의 문제의 모순점만 지적하자, 중립성이 모순된다면 인종종교적 집단에게 적용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킴리카의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흐두드는 또한 인종과 종교를 현실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왜 킴리카가 인종적 집단과 종교적 집단을 상이한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킴리카의 다문화주의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에서 조직화된 종교를 시민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대담자로 받아들이고 이들 종교 집단을 제도적으로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흐두드는 킴리카가 후기 이민 다문화주의의 지지자로서 보다 큰 사회의 제도는 이들 인종적 정체성을 보다 많이 인정해주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후기 이민주의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대단한 정책과 관대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마흐두드는 킴리카의 자발적인 이민자와 통합된 국민간의 이분법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킴리카가 소수민족과 토착민들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들의 상황을 왜곡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마흐두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킴리카는 이민자들이 왜 '다문화적'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개인적 자율성이 '사회적 문화의 공동체원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문화적 권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마후두드는 반이민적인 편견이 없고 인종과 종교를 분리하기보다는 함께 고려하는 다문화주의 이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국내에도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에서 설한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를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온 대표적 이론가로 킴리카를 평가하면서 킴리카는 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시되

어온 다문화주의 이슈에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그의 이론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그는 기존의 학자들이 지적해온 킴리카의 이론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는데, 우선 킴리카의 이론의 문제점은 본질주의적이라는 것과 사회적 문화 개념이 너무 동질적일 뿐 아니라 하나의 민족 혹은 종족집단과 문화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수민족과 소수종족의 구분이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라는 것이고 여타 범주의 소수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정과 문화적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을 외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종, 민족적 차별과 같은 문제들, 혹은 불평등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수집단이든 다수집단이든 이들의 사회적 문화는 단순히 도구적인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특정한 문화가 그 사회집단에 대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근거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정리하였다. 필자 자신 역시 킴리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 유대를 자율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격하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관계를 기능적 관계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좋은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율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율성을 문화 속에서 구현되는 다른 모든 가치 위로 평가되는 하나의 근본적인 최고선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율성이 유일한 도덕적 기준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와 자율성의 가치가 환원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을 위한 킴리카의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자율성'과 '문화에 의해 가능한 선택의 자유' 사이의 등치는 비논리적이며 결국 겉으로만 그럴듯한 것임이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한준성은 다문화주의 논쟁사에서 영향력이 큰 두 정치이론

3) 설한,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1호, 2010. 3, 59-84.

가인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였다.[4] 브라이언 배리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를 강력히 비판한 학자이며 윌 킴리카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학자이다. 한준성은 두 사람의 주장을 '개인과 집단,' '권리와 문화,' '정의,' '사회통합'의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박병섭은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에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윌 킴리카) 입장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등을 다루고 있다.[5]

박병섭은 한국에는 소수집단으로 소수민족, 원주민은 없고 이주자집단만 있는데, 한국의 이주자집단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이주 영어노동자, 새터민, 종족 중국인,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인여자친구와 그들의 자녀가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박병섭은 이들 중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 이민자를 윌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으로 다루면서 이들을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권리와 선 개념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상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와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노트는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킴리카의 다문화주의는 현실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론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중립성과 선의의 무관심의 문제를 표면으로 끌어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원리의 허점과 모순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론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작업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킴리카가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이론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이론에 재반영한다면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이론은 다문화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혜안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강대 사학과, hsppp@hanmail.net

---

4) 한준성,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 19집 제1호, 2010, 289-316.

5) 박병섭,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와 철학』제18호 2009. 10, 291-356

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23-35

로마제국의 이산(diaspora) 유대인

김 경 현

I. 로마제국의 유대인 이산

바빌론 유수, 그것은 유대인 이산의 전형적 사건이었지만, 정작 이산이 유대인 역사의 대세로 된 것은, 바빌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 즉 제2 성전기의 일이었다. 기원전 4~1세기에 동지중해 세계가 겪은 파상적 국제정세의 변화가 그 배경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페르시아 원정, 그 뒤 팔레스타인을 두고 각축한 이집트, 시리아 같은 헬레니즘 강국들, 그리고 마침내 '종결자' 로마제국의 대두. 그 격랑 속에서 '이스라엘 땅'(Eretz Israel)의 유대인은, 강제로 (전쟁포로) 혹은 자발적으로 (용병, 상인), 지중해 곳곳에 흩어졌다. 폼페이우스의 시리아 원정 승리로, 로마가 팔레스타인의 새 주인이 될 무렵, 지중해 주변의 이산 유대인을 두고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 사는 세상 치고,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다."[1]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에게 해 섬들, 그리스 본토 등지로의 유대인 이주는 이미 헬레니즘 시대에 그 윤곽이 드러났거니와, 새 정복자 로마인을 따라 이주 공간은 서부 지중해 세계로 확대될 터였다. 반세기쯤 지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총인구 약 70만 명에 달한 로마제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유대인 수는 어림잡아 6만 명에 달했다.[2]

동지중해 지역의 패권이 헬레니즘 왕국들에서 로마제국으로 넘어갈 즈

1) 인용문은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4권 7장 2절 (생명의 말씀사, 1987년, 2권, 224-225)에 나오는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보의 말.

2) D. Noy, *Foreigners at Rome: Citizens and Strangers,* London, 2000, 257-258.

음, 이산 유대인 인구는 이미 '본국' 유대인의 수를 현저히 압도했다. 한 추정통계에 의하면, 전자는 후자의 거의 7~10배에 달했다.[3] 관련 강대국에게, 유대인 문제는 팔레스타인만 아니라, 바빌론,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에페소스 같은 대도시의 이산 유대인 문제이기도 했다.[4] 그 문제에 관한 한, 로마는 대체로 헬레니즘 시대의 오랜 관행을 따랐다.[5]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다룬 방식과 그 결말은 판이했다. 시리아 왕국 치하에서 마카바이오스(Makkabaios) 가문이 일으킨 유대인 반란은 하스모네아 (Hasmonea)왕조의 독립국가 수립을 가져온 반면, 로마 지배 하에서 일어난 반란은 유대인 '본국'의 항구적 소멸을 초래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사실 로마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순간부터 유대인의 독립적 지위와 활동을 묵인할 생각이 없었다. 하스모네아 왕국은 해체되고, 제사장 지도하의 유대인 공동체에 다소 자치가 허용되었다. 유데아(Judaea), 갈릴리, 예루살렘 같은 지역은, 한 동안 헤롯 가문 같은 로마의 비호세력에 맡겨졌지만, 그조차 오래가지 않았다. 유데아는 마침내 황제직할속주로 편입되어 그 대리인(procurator)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꼭 60년 만에 (서기 66년)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로마지배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 유대사회의 내부의 복잡한 갈등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비상지휘권을 받고 급파된 베스파시아누스가 신속히 반란의 예봉을 꺾은 뒤,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을 때, 반란은 사실상 끝났다.[6] 그것은 제2 성전시대의 종말이기도 했다. 유대인은, 적어도 영토적 의미에서는, 돌아갈 '본국'이 없는, 보편적 이산의 단계를 맞았다. 이 새 국면은 20세기 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될 때까지 지속될 터였다.

---

3) L. Rutgers, "Attitudes to Judaism in the Greco-Roman Period", *Jewish Quarterly Review* 85 (1995), 364-365를 참조.

4) V. Tscherikover, *Hellenistic Civilization and the Jews*, Philadelphia, 1959, 269-332; J. Barclay, *Jews in the Mediterranean Diaspora from Alexander to Traj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9-47을 참조.

5) Th. Mommsen, *Römische Geschichte*, Band 5 (*die Provinzen von Caesar bis Diocletian*), Berlin, 1885, 497-499.

6) P. Schäfer, *The History of the Jews in the Greco-Roman World*, London, 2003, 65-161과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4-20권 (생명의 말씀사, 1987년, 2권, 205-664); 『유대전쟁사』 (생명의 말씀사, 1987년, 3권)

II. 이산 유대인의 조건: 구약시대와 제 2 성전기의 차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유대인 다음으로 이주, 이산이 활발했던 민족은 그리스인이었다. 이산 그리스인의 의식과 생활방식의 특징은 모국(metropolis)과 최소의 유대를 갖는 것이었다. 본토 산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수입하거나, 4년제 범그리스 축전에 참여하는 게 전부였다. 타향살이의 비애, 향수, 귀향의 염원이 좀처럼 예술적 모티브가 되지 않았으며, 이산의 담론 같은 것은 상상된 적이 없었다.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 오히려 세계시민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다.[7]

이산 유대인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 유다이즘 (Judaism), 즉 구약성서에 구현된 유대인의 가치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인에게 약속된 성지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삼았다.「신명기」는 열방 속에 흩어지는 것을 야훼와의 언약을 저버린 데 대한 징벌, 회개하여 극복해야 할 상태로 규정했다.[8] 야훼를 찬양하고 '성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산 유대인의 궁극적 목표였다.「시편」의 유명한 구절은 바빌론 포로시절의 그런 정신상태를 잘 보여준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 시온(Zion)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네...이국에서 우리가 야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거든...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137장, 1-6절) 그렇다면 이산 유대인은 그들이 정착한 이방의 주민과 어떻게 관계했을까? 구약성서는 대체로 이 애매한 문제를 비켜갔지만, 바빌론 포로시절이 배경인 예언서「예레미아」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선지자는 포로생활의 종식과 예루살렘 귀환을 예언하면서, 그 때까지 포로들이 "바빌론 성읍의 평안에 힘쓰기"를 권한다. 그래야 그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9] 일견 현실적응의 불가피성을 감안한 지혜로운 조언이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율법준수, 조국에 대한 애착, 귀환의 목표와 조화시킬지 막연했다. 의당 개인 혹은 집단마다 조화방법의 선택이 달랐을 것이며, 그것이 곧 각자의 정체성이기도 했다.

이산 유대인의 이 정체성 문제는, 제2 성전 시기에 더 절박한 문제로 대두했다. 바빌론 포로기와 달리, 돌아갈 성지와 성전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

7) M. Baslez, *L'étranger dans la Grèce antique*, Paris, 1984, 209-355.
8) 「신명기」30장 2-5절.
9) 「예레미아」29장 5-7절.

운데, 유대인의 압도적 다수가 열방에서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순 상황에 대한 해명논리가 필요했으며, 그 핵심은 유다이즘을 하나의 중심, 즉 예루살렘과 그 성전과 결부시킨「신명기」적 시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비교적 온건하고 일반적인 대안은, 예루살렘이 율법, 즉 텍스트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좀 더 나아가,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 공동체가 곧 예루살렘이라는 논리도 가능했다. 요컨대 '영토성'이 텍스트로 대체되고, 중심/주변의 이분법이 해체되었다.[10] 따라서, 헬레니즘 및 로마시대의 유대 이산 지식인들이 종종 선조 때부터 뿌리내린 이방과 예루살렘을 구별해, '아버지의 땅'(patris)과 '어머니의 땅'(metropolis)으로 부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구약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도 그런 이산철학의 산물이었다.[11] 그뿐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땅'에서 자신들의 위업에 자부심을 가졌고, 따라서 해당 도시의 시민권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들의 글에 '어머니의 땅'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우울한 회상이 여운으로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토라(Torah)에 대한 경외심의 발로일 뿐 현실을 규정한 요인은 아니었다.[12]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이방에서의 타협과 순응을 거부하고, 귀환을 꿈꾸는 이산 유대인들의 외침이었다. 예루살렘의 사제들의 권위를 강조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을 모아 성전으로 돌아갈 것을 노래한 기원전 2세기의 벤-시라(Ben Sira), 그리고 앗시리아에 의한 이산의 역사를 기록한 <토비트(Tobit)>과 그 속에서 귀환과 성전재건을 꿈꾼 지혜서 <유딧(Judith)> 등은, 당대 이산 유대인의 타협주의에 대한 우의적 경고였을지 모른다.[13] 그러나 그것은 분명 소수의, 그리 명료하지 않은 주장이었다.

---

10) W. Davies, *The Territorial Dimensions of Juda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54-90.

11) D. de Crom, "The Letter of Aristeas and the Authority of the Septuagin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17(2008), 141-160.

12) E. Gruen, *Diaspora: Jews admist Greeks and Romans*, Harvard Univ, Press, 2002, 232-252; J. Baclay, 윗책, 421-423을 참조.

13) 벤 시라에 관해서는 B. Wright III, *Praise Israel for Wisdom and Instruction: Essays on Ben-Sira and Wisdom, the Letter of Aristeas and Septuaginta*, Brill Academic Publisher, 2008, 97-126을,「토비트」와「유딧」에 관해서는 E. Gruen, 윗책, 248-249를 참조.

그렇다면 제2 성전 시대에 그리스-로마 문헌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유대인 혐오'(Judenhass), 심지어 '유대인 학대'(Judenhetzen) 같은 현상은 무엇인가? 이산 유대인 다수가 정착지를 조국으로 삼고, 적응하는 삶을 선택한 점을 감안할 때, 도대체 왜 그런 반 유대인 정서가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19세기부터 '반유대주의'(anti-semitism)라 부른 정서/행태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그와 구별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제대로 알려면, 잠시 시선을 19-20세기로 돌려, 유대인이 겪은 격동과 그것의 학문적 파장을 살펴야 한다.

Ⅲ. 이산 유대인의 조건: 시오니즘과 홀로코스트의 여파

그 격동이란 주지하듯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재건으로 귀결된 시오니즘의 대두와 나치의 홀로코스트였다. 이 사건들은 특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을 촉발했다. 유대인이란 누구이며, 유다이즘이란 대체 무엇인가? '열방'(세계)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유대인에게 있어 이 현실적인 문제가 곧 역사적 문제로 전환된 것은 거의 필연적이었다.

우선 유대인 대학살은, 유럽문화 구석구석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스며들게 한 기독교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4] 그 일환으로 그리스-로마의 이교문화 속에서 반유대적 정서와 기독교의 반유대주의를 구별하려는 역사연구가 활발해졌다. 후자는 무엇보다 신학적 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자의 단순한 문화적 이질감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대인의 예수살해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박해, 같은 뿌리를 갖는 유대교와의 차별성 강화 등이 주요 논거였다.[15]

그래서 고대지중해의 반유대인정서에는 반유대주의라는 시대착오적 용어 대신 유대인혐오(Judeophobia)나 반유다이즘(anti-Judaism)이란 표

14) 로버트 위스트리치,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송충기 역, 을유문화사, 2004, 33-39를 참조.

15)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권 (한길, 2006), 37-45; J. Gager, *The Origins of Anti-Semitism: Attitudes toward Judaism in Pagan and Christian Antiqu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13-23.

현을 쓰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16]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정작 반유대인정서란 대체 어떤 것인지, 특히 제 2 성전기부터 종종 발생한 이산 유대인에 대한 제재/폭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크게 기능주의론과 실체론이 맞섰다. 전자에 의하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그저 이질감일 뿐 실체 있는 적대감이 아니었으며, 그들에 대한 제재/폭력은 대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후자는 유대인 공동체의 특이한 존재방식 (유다이즘)에 대한 이방인의 적대감이 견고하게 존재했으며, 그것이 제재/폭력의 배경이자 구실이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방인의 편견과 공격성을 자극한 유대인의 특이성 (혹은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였다.[17]

반유대주의의 역사성에 대한 탐구는 궁극적으로, 또 다른 계기, 즉 시오니즘이 불러일으킨 문제에 수렴했다. 18-19세기에 서부/중부유럽 국가들이 유대인에 법적 '해방'(Emancipation)을 제공한 이래, 한 세기 남짓 유럽 유대인 사이에는 '동화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이산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산을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 각자의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것은 이산 유대인의 불가피하고도 명예로운 기획이라는 논리였다.[18] 하지만 19세기말부터 일어난 유대인 민족주의(시오니즘)는 그 논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에 의하면, '해방'이란 유대민족의 점진적 해체를 위한 속임수였을 뿐이며, 반유대주의는 불변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서유럽 유대인은 이룰 수 없는 '동화'의 꿈에 속아, 너무 쉽게 자신의 전통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다.[19] 결국 '누가 유대인인가?', '유대인다움(Jewishness)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궁극적 쟁점이 되고 있었다.

그 논란은 2차 대전 직후 한층 더 뜨거워졌다. 1948년의 이스라엘 국가재건, 그리고 1961년의 아이히만 재판을 계기로 부각된 홀로코스트 문제가 주요 계기였다. '누가 유대인인가?'라는 물음은 작게는 이스라엘로

16) P. Schäfer, *Judeophobia: Attitudes toward the Jews in the Ancient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197-211.

17) 기능주의론과 실체론의 계보에 대해서는 P. Schäfer, *Judeophobia*, 1-8을 참조.

18) T. Endelman, "The Legitimization of the Diaspora Experience in Recent Jewish Historiography", *Modern Judaism* 11 (1991), 195-197.

19) L. Wolf, "The Zionist Peril", *Jewish Quarterly Review* 17 (1904), 1-25, 특히 6을 참조.

돌아오는 이주유대인 자격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적 의제였다.[20] 하지만 그 물음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국가수립 후 이산상태에 남은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 점검 같은 것이었다.[21] 한나 아렌트의 이중성이 예시하듯, 그에 대한 유대 지식인의 반응은 착잡했다. 그녀는 스스로 독일사회에 동화한 유대인으로 시온주의의 부족주의적 배타성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동시에 '해방' 후 서유럽 유대인 지도층이 취한 나이브한 동화주의가 홀로코스트의 비극에 적잖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22]

하지만, 대체로 리버럴한 유대 지식인은 동화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했다. 그들은 오히려 시온주의야말로 이방의 민족주의를 본떠 종교인 유다이즘을 정치로 변질시켜 반유대주의를 자극했으며, 또 '유대인다움'을 팔레스타인이라는 비현실적 '공간'에 속박하는 편협한 지방주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23] 그들에 의하면, 유대인이 각자 속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반유대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며, 그러면서도 충분히 유대인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입장의 에너지는 두 가지 채널로 연결되었다. 하나는 유대인의 전통이 주변문화에 참여하고 공존하기 위해 근대화해야 한다는 개혁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이즘학문(Wissenschaft des Judentums)이었다. 근대유럽 각국의 유대인 공동체의 동화주의에 대한 실증 연구가 대세인 가운데, 제 2성전기와 중세 유럽의 이산 유대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24] 반유대주의를 중심으로 이산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 속에서 '유대인다움'의 역할과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주요한 공통관심사였다.

Ⅳ. 로마제국의 이산 유대인의 조건: 미국의 한 백인 고전학자의 시선

20)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3권: 홀로코스트와 시오니즘, (살림, 1998), 261-264.

21) M. Marrus, "European Jewry and the Politics of Assimilation", *Journal of Modern History* 49 (1977), 89-109.

22) 한나 아렌트, 윗책, 161-214; S. Muller, "The Origins of Eichmann in Jerusalem: Hannah Arendt's Interpretation of Jewish History", *Jewish Social Studies* 43 (1981), 237-254.

23) W. Laqueur, "Zionism and its Liberal Critics, 1896-1948",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6 (1971), 161-182를 참조.

24) T. Endelman, 윗글, 197-206.

1970년대 이래 이산 유대인에 대한 역사연구의 무대는 주로 미국이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추세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2차 대전 후,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은 최대 유대인 인구를 가진 국가였다.[25] 게다가 미국의 이산 유대인은 사상 처음으로,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하고, 나아가 미국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다. 그리하여 고대 유대인을 연구하는 미국의 한 유대 역사가는, 고대와 미국의 이산 유대인을 비교해 이렇게 썼다. "미국의 유대인은 그저 백인, 중산층 미국인이다. 고대의 어떤 유대인 집단도, 그만큼 그들이 속한 사회에 받아들여져, 스스로 종족적 연관을부인할 정도로 통합된 적이 없었다."[26] 아마 미국의 유대인 역사가 보다 이산의 삶에 대한 변명의 동기가 더 분명하기는 어려웠을 법하다.[27]

그런데 최근 약 10년간 미국에서 나온 고대 이산 유대인 연구서들 중에, 저자의 정체성과 그 논지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버클리 대학의 고전 고대 역사가 그루엔 (E. Gruen)의 책『이산: 그리스인과 로마인들 속의 유대인』(2002)이 그것이다. 이 책의 취지는, 로마제국 하 이산 유대인이 주변 이방인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종종 괴롭힘을 당하던, 불안정한 집단이었다는 통념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로마 시대 이산 유대인은 종교/문화유산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소속사회에 적극 참여/기여한 건강한 집단이었다. 통념에 대한 도전보다, 이 책의 더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예상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계 백인이란 사실이다. 게다가 그는 1992년 미국의 고전학회장을 역임할 만큼 탁월한 고대사학자였다.

사실 그루엔의 연구주제는 80년대 중반까지, 로마 제국주의와 공화정 후기의 내정 등, 주로 정치사에 집중되어 있었다.[28] 그러나 90년대 초 그에게 '문화사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는 특히 선진 그리스 문화를 타자화

25) 폴 존슨, 윗책, 307-320을 참조.

26) S. Cohen, *The Beginnings of Jewishness: Boundaries, Varieties, Uncertain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347.

27) T. Endelman, 윗글, 197.

28) 이와 관련된 그의 주저로 *Roman Politics and the Criminal Courts, 149-78 BC*, Cambridge, 1968; *The Last Generation of the Roman Republic,* Berkeley, 1974; *The Hellenistic World and the Coming of Rome*, 2 vols., Berkeley, 1984를 꼽을 수 있다.

하면서 성장하는 로마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29] 이 전환의 계기는 분명 당시 미국 언론과 대학가를 풍미한 다문화주의의 충격이었다. 92년 미국 고전학회 회장 취임사에서, 그는 고전학이 다문화주의의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우울한 사태를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30] 그런 그의 관심사가 마침내 그리스-로마 시대의 이산 유대인 문제에 귀착한 사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짐작된다. 우선 로마제국-헬레니즘 간 문화접변에 대한 연구에 이어, 문화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주제는, 사료가 비교적 풍부한 유대역사 밖에 없었다. 또 하나, 다문화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백인과 유대계의 리버럴한 지식인, 특히 고대사학자들이 서로 강한 동질감을 체험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그루엔은 유대인과 헬레니즘의 만남을 다룬 첫 번째 책『유산과 헬레니즘: 유대 전통의 재발명』의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몇몇 이스라엘 친구들이, 내가 이 주제를, 리버럴하고 세속화한 이산 유대인의 삐뚤어진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조롱했다. 나는 그 혐의를 인정한다."[31] 그러니까, 그 후속작품『이산: 그리스인과 로마인들 속의 유대인』역시, 리버럴한 미국 유대인을 위한 일종의 변명이다. 그는 로마제국의 이산 유대인의 비슷한 체험을 제시해, 오늘날 미국에 완벽히 동화한 유대인 공동체의 삶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리하여 로마제국 속 유대인의 이산체험은 과거와 사뭇 다르게 그려진다. 그것은 과거 같은 주제를 다룬 유대계 학자들에게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시각이다.

그루엔의 사료는 두 부류이다. 하나는 로마시대 이산 유대인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기록한 문헌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정서가 투영된 허구적 문헌이다. 전자를 이산 유대인의 3대 공간 (수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로 나누어 검토한 방식은 종래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특히 유대인에 대한 제재/폭력의 기록이 집중된 두 곳 (수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관련 기록을, 그루엔은 남다른 문헌학적 기법으로 다르게 읽는다. 수도 로마에 관해서는, 기원전 2세기~서기 1세기에 거듭된 유대인 추방

29) 이와 관련된 그의 주요 연구서로 *Studies in Greek Culture and Roman Policy*, Brill, 1990; *Culture and National Identity in Republican Rom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가 있다.

30) 김경현, "검은 아테나 여신: 오늘의 미국과 고대 그리스",『창작과 비평』(2003년 여름), 264.

31) *Heritage and Hellenism: the Reinvention of Jewish Tra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ix.

령을 면밀히 분석해, 이런 결론을 제시한다. 그들은 유대인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으며, 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계기가 아니었다. 추방령에는 다른 외인집단이나 외래종교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방령의 계기는 정부의 이미지 쇄신 혹은 위정자의 상황논리 같은 정치적 동기였다. 예컨대 서기 19년의 추방령이 그랬다. 게르마니쿠스 독살사건에 티베리우스 황제 연루설과 함께 흑색마술이 성행하자, 황제는 여론 쇄신을 위해 추방령을 내렸다. 그에 의하면, 유대인은 수도 로마에 잘 순응하고 있어서, 공적/사적 영역에서 불온집단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로마 지식인의 글을 보면, 유대인은 금식과 할례, 안식일 등 기이한 관습을 지닌 집단으로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것이 불관용과 폭력으로 비화할 정도는 아니었다.[32)]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문제는, 사실 그루엔의 새로운 설명방식이 어떨지 자못 기대되었던 대목이다. 서기 38년에 일어난 유대인 학살사건은, 그 도시의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의 해묵은 종족갈등이 폭력사태로 비화한 것으로, 고대세계의 반유대주의의 전형적 사례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유대인을 대표해 로마황제를 알현하러 간 필로(Philo)가 남긴 기록이 꽤 상세하게 그 사태의 전말을 전한다. 그루엔은 그것을 역시 독자적 방식으로 읽어 사태의 진상과 유대인의 처지를 설명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폭동은 특수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불거졌다. 소요 앞에서 우왕좌왕한 로마 총독, 도시의 일부 그리스 계 인물들의 비뚤어진 야심, 이집트 원주민의 누적된 불만이 우연히 어우러진 결과였다. 유대인의 피해가 심했지만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그 사태를 너무 과장하면 보다 큰 전망이 왜곡되기 쉽다. 로마제국 하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은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서 충분하게 기여했다. 그래서 그들만의 정치조직을 유지하고, 종교제도와 전통은 공적으로 승인받는 가운데, 도시의 시민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시민이었다. 서기 38년 사태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역사를 규정/예시하는 전형적 사례가 결코 아니다.[33)]

그루엔이 다루는 또 다른 문헌은, 역사기록이 아닌 픽션의 범주이다. '역사소설'로 불러도 좋을 「에스더」,「토비트」,「유딧」,「수산나」 같은

32)E. Gruen, *Diaspora*, 15-53.
33)윗책, 54-83.

구약외경과「마카비 2서」, 그리고「욥기」와 구약 이야기를 개작한「아브라함 서」와 아르타파누스의 글이 그에 속한다. 모두 제2 성전기 후반의 저술로 추정된다. 앞의 다섯 개 '역사소설'에는 이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유대인은 앗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보다 큰 이방세력과 투쟁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루엔은 이 작품들에 넘치는 농담과 풍자에 주목한다. 그 유머가 암울한 이산의 조건을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대개 참담한 상황에서 조롱과 질타의 대상이지만, 종내 그것을 극복하고 안전을 얻는다. 그가 보기에, 이 플롯은 이산 유대인의 눈물어린 미소가 아니라, 안전과 자존감의 표현이다.[34] 한편 구약을 개작한 다른 이야기들은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산의 조건을 시사한다. 그 어디에도 이방인과의 갈등에 대한 암시는 없으며, 오히려 아르타파누스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근동의 주민과 그리스인에 기여한 문화영웅으로 묘사한다.[35]

요컨대, 그루엔이 문헌학적 면밀성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두 부류 문헌에서 다시 읽어낸, 로마제국의 이산 유대인의 체험은 매우 밝고 긍정적인 것이다. 허구적 문헌은, 이방환경 속에서 잘 적응해 안전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유대인의 모습을, 역사기록은 특수한 (혹은 우연한) 정치적 계기 외에는 유대인에 대한 불관용/폭력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로마시대 이산 유대인의 이처럼 안전하고 활기에 찬 모습은 너무도 오늘날 미국 유대인 공동체의 조건을 닮아 있다.

Ⅴ. 남은 이야기: 유대인 고전학자들의 시선

반유대주의(anti-semitism)란 말은 188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홀로코스트의 충격은 그 단어가 함축하는 집단심리/행태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저 반인간적 사태의 배후에는 분명 단순한 편견이나 거부감을 고질적 적대감으로 탈바꿈시킨 이념이나 정연한 교설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었다. 그 결과, 기독교, 계몽사조 속에서 발생한 인종주의, 그리고 19-20세기 독일 민족주의가, 홀로코스트를 초래한 반유대주의의 주요 배양요소였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 그리스-로마의 이교세계에서 확인되는

34) 윗책, 135-181.
35) 윗책, 182-212.

반유대인 정서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며, 따라서 유대인에 대한 간헐적 폭력의 원인도 달리 설명되어야 했다.

고대의 이산 유대인이 겪은 제재/폭력이 종교/인종적 편견이 아니라 주로 정치적 계기를 갖는다는, 소위 기능주의론은 그 해법의 하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의 특이한 종교와 생활방식에 대한 혐오와의 인과관계를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그 가설의 원조 격인 독일의 유대계 고전학자 하이네만(I. Heinemann)은「고대세계의 반유대주의」란 글에서 이렇게 썼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치적 반감은 오직 권력관계의 산물이고, 정신적 반감은 유대종교에 대한 거부감의 산물이라고, 나누어 설명할 수 없다. 유대종교에 대한 최악의 중상이 권력갈등 속에서 나왔듯이, 반대로 정치투쟁의 열정 또한 분명 유대인의 믿음과 특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격해졌기 때문이다."[36] 그루엔이 묘사한 로마시대 이산 유대인의 조건은, 기능주의론을 독특하게 변형시킨 것이다. 그에 의하면 유대인이 겪은 제재/폭력은 주로 위정자의 정치적 목적 혹은 무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대인-이방인 간의 정치투쟁이 아니었으며, 하물며 유대인, 유대 종교에 대한 혐오감 때문은 더욱 아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수도 로마든, 알렉산드리아든, 그 환경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루엔의 시선은 미국 유대인의 특수한 현실이라는 프리즘을 경유하고 있어서, 고전문헌이 주는 익숙한 이미지와 크게 엇갈린다. 오히려 20세기 초 유럽 각국에서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울한 이산 조건을 체험한 유대계 고전학자들의 시선이 그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그리스-로마의 반유대인 정서는 무언가 실체가 있는, 지속적인 심리상태였다. 다만 그 집단심성의 표현방식만이 훗날의 반유대주의와 달랐을 뿐이다. 러시아에서 독일을 거쳐, 이스라엘로 돌아간 고전학자 체리코버(V. Tscherikover)는 그 실체론을 이렇게 설명했다. "역사가가 특정 시기의 반유대주의를 탐구하려 할 때, 그것이 표현되는 복잡하고 아리송한 방식 앞에 당황하곤 한다...그를 기다리는 큰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그 심리상태의 내적 본질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그것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방식을 혼동하는 것이다. 반유대주의의 내적 본질은 유대인이 열방 속에 외래집단으

36)"Antisemitismus", in *Pauly-Wissowa R.-E.* Supplementum 5 (1931), 38.

로 존재한 순간부터 발생한다."[37] 고전고대와 유대 고대 연구자 대다수는 아직도 이 해묵은 시선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cicero@korea.ac.kr

37) V. Tscherikover, 윗책, p. 358. 한편 체리코버를 비롯해 특히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 고전학자들에 관해서는 Chr. Hoffmann, *Juden und Judentum im Werk deutscher Althisroker des 19. und 20. Jahrhunderts,* Brill, 1988, 200-201을 참조.

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36-54

■ 논문 ■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계급과 인종 사이

신 동 규

I. 서론

20세기 들어 테일러 주의에 입각한 생산방식의 발달은 자동차, 제철, 조선,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공장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수요를 증가 시켰다. 이는 농촌의 농업 노동자들의 산업 프롤레타리아 화를 촉진 시키면서 노동인력의 지역 간 혹은 국경 간 이동을 증가시켰으며, 산업화가 늦은 주변국 또는 식민지로부터의 노동자 수입을 증가시켰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정에 투입되었으며 비위생적인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위험에 노출 되어있었다.[1]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럽 각국의 노동조합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는 한편 내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거리를 두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분쟁조절과 사회통합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2] 이것은 전통적으로 노동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으로 부터 기인한다. 첫 번째로 계급의식에 기반을 두어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단일전선'을 추구하며 차별을 철폐 하려는 경향이며, 두 번째로

1) 프랑스의 이민현상에 관해서는 Y. Lequin ed., *Histoire des étrangers et de l'immigration en France* (Paris: Larousse, 2006); G. Noiriel, *Longwy, Immigrés et prolétaire*(Paris: PUF, 1984); G. Noriel, *Le Creuset français, Histoire de l'immigration*(Paris: Seuil, 1988); P. Weil, *La France et ses étrangers*(Paris: Folio, 2004) (première édition 1991) 참조.

2) R. Pennix et J. Roosblad ed., *Trade unions, immigration and immigrants in Europe, 1960-1993* (New York: Berghahnbooks, 2000), 111-132; R. Gallissot et al., *Ces migrants qui font le prolétariat* (Paris: Méridien-klincksieck, 1994), 114; A. Morelli, «Ambiguïté et contradictions des rapports entre syndicats et étrangers: le cas des Italiens», *Brood & Rozen*, 1997/1, 65-71.

보호주의에 입각해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하고 노동시장 통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태도이다.[3] 따라서 비계획적인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에 부정적이며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모순적인 두 시각은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기와(1930년대와 1970년대 이후)와 경제 호황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한 시기에(192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광의 30년') 명확하게 나뉜다.

1970년대 오일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 이전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들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가노동력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동화(assimilation)' 또는 '통합(intégration)' 정책은 1970년대 까지는 부재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1974년 프랑스 정부가 경제이민의 제한과 기존 이민자의 통합을 이민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부터 이민자 통합정책이 논의되기 시작 하였으나 통합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의된 것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다.[4] 1981년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and)의 집권 이후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의 가족결합 정책이 시작되어 고향에있는-주로 북아프리카 및 남유럽- 가족들의 합법적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통합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 중 하나였다.

이주노동자를 일시적인 노동력 공급 요인으로 보는 인식과 그로인한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는 이들을 특수한 조건을 가진 집단보다는 '노동계급'의 일부로 파악하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사이의 '권리 평등 투쟁(lutte pour l'églité des droits)'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정책을 만들어 냈다. 노동총연맹의 총비서 조르쥬 세기(Georges Séguy)가 강조하듯 노동조합은 "프랑스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의 동등한 권리, 동등한 월급, 동등한 생활수준"을 주장해왔다.[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실제로 정착하는 이민자의 숫자가 늘어나자 이들이 처한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는 시각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는 동시에 '통합'

---

3) 프랑스의 경우, 신동규, 「CGT의 이주노동자 정책: 모순과 한계, 1921-1981」, 『공존의 기술』(그린비, 2007), 343-346 참조.

4) 그 이전에는 동화, 통합, 편입등의 용어가 구별없이 사용되었다. 이권능, 「이민자 관점에서 본 통합을 위한 정부 노력의 현실과 한계」, 『공존의 기술』(그린비, 2007), 350.

5) *Lettres ouvertes à Georges Séguy, suppléant au Peuple*, n° 860. 15 février 1975, 53.

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 노동조합들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e)'에 입각한 '차별철폐투쟁(lutte contre la discrimination)' 구호는 197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던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평등' 구호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와 노동·고용문제에 대한 유럽 노동조합들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에서 명확하게 관찰되는 이러한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조합이 계급투쟁의 '도구'에서 국가정책의 '사회적 파트너'로 변화하는 중·장기적 변화와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변화는 노동계급으로써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계급투쟁' 이념 아래 '이주노동자' 문제에 접근했던 종래의 원칙이 각 '에스닉(ethnic)'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역설적이게도 종래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을 둔 인종주의가 문화적·사회적 차이를 통해 '타자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신인종주의(neo-racisme)로 발전하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6] '인종이 없는 인종주의'로 정의 되는 이 새로운 인종주의는 종래의 유럽인들의(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유입과는 다른 이질적 문화 –이슬람–를 가진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즉 절대화된 문화적 차이를 통한 구별과 차별은 알제리인 이민 확대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관찰되기 시작했다. [7]

---

6) 신인종주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E. Balibar and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New York: Verso, 1991), 19-29. 프랑스 민족전선(Front National)의 신인종주의에 대해서, 박단, 「현대 프랑스 사회의 인종주의: 민족전선의 이민정책과 신인종주의」, 『서양문명과 인종주의』(지식산업사, 2002), 249-255 참조. 인종주의와 이민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하시오. M. Marco et al., *Immigration et integration en Belgique francophone : Etat des savoirs* (Bruxelles: Editions académia, 2007); C. Delacampagne et L. Adler, *Une histoire du racisme* (Paris: Livre de poche, 2000); G. Noriel, *Populqtion, immigration, et identité nationale en France, XIXe-XXe siècle* (Paris: Hachette, 1992); G. Noriel. *Immigration, antisémitisme et racisme en France (XIXe-XXe siècle) : discours publics et humiliations privées* (Paris: Hachette, 2007).

7) 박단, 「현대 프랑스 사회의 인종주의: 민족전선의 이민정책과 신인종주의」, 245.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파업은 신인종주의적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단순노동에 종사하던 파업 노동자들의 이중적 정체성 -단순 노동자(ouvrier specialisé)[8]와 이주노동자(travailleur immigré)-은 계급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파업 노동자와 파업의 범위를 이주노동자로 한정 시키려는 기업/정부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며, 이 갈등은 바로 신인종주의적 담론이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로르 피티(Laure Pitti)가 지적하듯 이민 노동자가 포함된 분쟁을 '이민 투쟁(lutte de l'immigration)'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 사건이 함의하는 노동자성 또는 '노동자 파업(grève ouvrière)'의 성격이 은폐된다.[9] 본고에서는 피티의 제안에 따라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고, 반대로 누가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된 노동분쟁을 이주노동자의 투쟁으로 정의하는지 살펴보면서 프랑스에서 신인종주의적 담론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 볼 것이다.

II.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의 증가와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정책: 비숙련 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

1962년 알제리 독립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 종결은 프랑스로 유입되는 이민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전환점이었다. 알제리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62년 3월 18일에 체결한 에비앙 협정(Accords d'Evian)은 전쟁의 종결과 함께 알제리와 프랑스 사이 협력과 교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프랑스가 알제리의 독립을 인정하고 경제적, 기술적 원조를 하는 대가로 알제리에서 프랑스 또는 프랑스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특히 알제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Pied noir)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따라서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던 알제리인에 관한 문제는 양국 사이의 중요한 협의 대상이었다. 독립 이전 행정 구역상 도(département)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알제리 출신의 노동자들은 자

8)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ouvrier profesionnel(숙련공)'의 대칭의미로 쓰이는 'ouvrier spécialisé'는 생산과정에서 가장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이다. Adam Steinhouse가 'unskilled workers'로 번역한 예를 따라 여기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로 번역함. A. Steinhouse, *Workers' Participation in Post-Liberation France* (New York/Oxford: Lexington Books, 2001), 34.

9) L. Pitti, «Grèves ouvrières versus lutte de l'immigration: une contoverse entre historiens», in *Ethnologie française*, vol. 31, 2001, 465-467.

유롭게 프랑스로 이동하여 단기간 체류하고 귀국하는 현상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10],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인의 상당수가 단기간 체류 후 귀국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인정하였다.[11] 이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 국적자의 이주를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단기체류 후 귀국하는 이민자의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1960년대에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급속하게 증가한다. 1962년 43만 명이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1968년에는 65만 명으로 늘어났고, 1975년 인구조사에서는 10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968년부터 1975년 사이 전체 이민증가량의 78퍼센트가 아프리카 출신이며, 이 기간의 증가율은 1968년 이전에 비해 약 2배에 이르렀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이 증가하던 시기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 노동자들이 배척하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업종에 종사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자를 고용하기 힘든 건설, 자동차, 화학, 제철 등의 산업에서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흡수하였으며, 이러한 고용은 생산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즉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거나 임금을 상승 시키는 것을 대체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 한 것이다.[12]

표1) 프랑스에 거주하는 국적별 인구(남·여 노동자, 여성, 16세미만 아동). (1974년 1월 1일)

국적	프랑스 거주	남여 노동자	여성 총계	16세미만 어린이	특징
알제리	845,694	450,000	80,000	226,000	부메딘 대통령이 이민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민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
포르투갈	820,000	390,000	205,000	239,000	1974년 전반기, 포르투갈인들은 신규 도착자의 1/4을 차지함. 4월 25일부터 식민지 전쟁을 피해 도망했던 청년들이 귀국함.

10) B. Strora et E. Temime, «L'immigration algérienne», in L. Gervereau, P. Milza et E. Termime(dir.),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au XXe siècle* (Paris: Editions d'Art, 1998), 125, 박단, 「알제리인의 이주와 정착」,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258에서 재인용.

11) B. Strora et E. Temime, «L'immigration algérienne», 130, 박단, 「알제리인의 이주와 정착」, 262에서 재인용.

12) 손영우,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주의 성격: 이민자와 이민 2세의 사회경제적 위치」, 『공존의 기술』(그린비, 2007), 256-259.

이탈리아	572,000	220,000	193,000	130,000	프랑스 국적취득으로 숫자가 줄어듬. (1962년부터 1972년 사이: 94 284)
스페인	570,595	260,000	197,000	130,000	1964부터 1969년 사이 숫자 증가한 이래로 줄어들고 있음. 1962년부터 1972년 사이 82 766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
모로코	270,000	180,000	30,000	42,000	최근 모로코인들은 프랑스에[입국한] 신규 도착자 중 2위.
튀니지	150,000	95,000	25,000	29,000	모로코인들과 같은 경향.
1. 200,00명의 해외 영토 및 도 출신, 80,000명의 유고슬라비아인, 60,000명의 아프리카인(북아프리카인 제외), 45,000명의 터키인들이 있다.					

출처: André Vieuguet, Français et immigrés: Le combat du PCF(Paris: Editons sociales, 1975), 17.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공장으로 흡수되었다. 1969년 파리 근교에 위치한 르노(Renault) 자동차의 비앙꾸르(Billancourt) 공장에는 전체 직원의 39%에 해당하는 11,93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으며, 이중 알제리 출신이 3,842명, 모로코 출신이 2,062명, 튀니지 출신이 1,149명, 그리고 세네갈 출신이 610명으로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의 노동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럽 출신의 노동자는 스페인이 1,690명, 포르투갈이 934명, 이탈리아 263명으로 아프리카 출신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13] 쇼쏭(Chausson)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파리 북쪽의 주네빌리에(Gennevilier)에는 1954년 33,127의 주민 중 8,57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7,476명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 1968년도의 인구조사에서는 46,099명의 주민 중 외국인은 12,556명이었으며, 그중 북아프리카 출신은 10,058명이었다.[14] 지방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비율은 높았다. 1967년 12월을 기준으로 리옹(Lyon)의 외곽인 베니씨유(Vénissieux)에 위치한 베를리에(Berliet) 자동차 공장에는 11,000명의 노동자 중 1,19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 이중 알제리 출신이 6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101명), 아르메니아(179명), 스페인(91명)으로 부터 온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 비숙련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높았다. 베를리

13) J. Frémontier, *La Forteresse ouvrière: Renault* (Paris: Fayard, 1971), 111.

14) B. Massera et D. Grasson, *Chausson: une dignité ouvrière* (Paris: Syllepse, 2004), 206.

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70%가 비숙련 노동자였으며 절반 이상은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는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15] 1968년 르노의 경우 그룹 전체에 17,488명의 외국인이 있었으며 이중 16,727명이 비숙련 노동자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이나 건설 산업 분야에 흡수 되었다. 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 총비서인 죠르쥬 세기(Georges Séguy)가 프랑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2대 중 1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2채 중 1채의 주택과 도로의 90%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정도로 비숙련 노동 분야의 외국인 비율은 높은 수준이었다.[16]

표2) 르노 전체 공장에서 직무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분류 (1968년 9월 30일)

국적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	월급제 사무원	간부, 관리자	계
이탈리아	3,997	278	49	20	4,344
스페인					
포르투갈					
북아프리카	9,540	233	45	4	9,822
검은아프리카	2,192	10	6	0	2,208
기타	998	79	36	1	1,114
계	16,727	600	136	25	17,488

출처: J. Frémontier, La Forteresse ouvrière: Renault(Paris: Fayard, 1971),112.

에비앙 협정 직후 노동총연맹과 프랑스민주노동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은 이주노동자와 이민 문제에 있어서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66년 1월에 발표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동 정책에 잘 드러난다. 이 공동정책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빈곤한 계층(catégories défavorisées)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의 구매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두 노총의 최대 정책목표였다. 또한 1974년, 노동총연맹과 프랑스민주노조연맹은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공동 행동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이 프랑스에 단기간 체류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관심은 외

15) Compte rendu du Comité d'Etablissement de Vénissieux, réunion du 18 janvier 1968 (Archives du CE-RVI)

16) G. Séguy, *Lettre ouverte à Georges Séguy*, Brochure, supplément au Peuple, n°860, fév. 1975, 53. 신동규, 「CGT의 이주노동자 정책: 모순과 한계, 1921-1981」, 『공존의 기술』(그린비, 2007), 323에서 재인용.

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조건과 프랑스 사회에 인간적인 편입에 집중되었으며, 체류기간 동안 프랑스인과 동일한 노동권을 가지는 문제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들과 장기간 공존하는 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으나, 이들의 자녀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흔적이 노동조합의 정책에 나타난다.[17] 1960년대까지 프랑스 노동조합의 정책에서 이주노동자는 아직 특수성을 가진 에스닉(ethnic)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노동과 고용 부분에서 나타난다. 즉 대부분 단순 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비숙련 노동자(OS)로 분류하여 대응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특수한 집단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노동자 계급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이주노동자들이 비숙련 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과 모욕이 공장에서 일상화 되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이 처한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생겨났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고온에 환기가 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프랑스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관리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으며 프랑스인 관리자들이 인종주의적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었다. 1970년대에 르노자동차, 쇼쏭자동차, 리옹전선(Câbles de Lyon) 등에서 일어난 파업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잘 말해준다. 이들 기업의 노무관리 시스템은 과거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제국주의 국가의 백인과 식민지의 흑인의 관계가 고스란히 공장으로 이전 된 것이었다. 따라서 '북아프라카의 노동자들=노예'라는 생각을 가진 관리자들에 의해 비인간적 취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식민지 상황의 연속으로 인식되었다. 쇼쏭의 한 이주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아주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습니다. 임금은 정말 아주 아주 아주 낮았고… 쇼쏭은 외국인 노동자, 특히 모로코 남부에서 온 노동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가격에나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들 이었습니다. 쇼쏭은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조장, 작업조장, 감독관 같은 작은 직급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소홀히 대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리고

17) R. Mouriaux et C. Wihtol de Wenden, «Syndicalisme français et Islam»,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n°6, 1987, 801.

작업라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로코 출신의 아랍 노동자만 볼 수 있었어요."[18] 이러한 관계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외국인 혐오주의와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관리자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르노의 한 노동자는 회사 측의 인종주의적 행동을 다음과 묘사하고 있다: "최악이자 새로운 것은 지금 관리자들이 우리를 검둥이와 더러운 인종으로 취급하는 야비한 말과 욕설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종을 더럽다고 취급하는 국영 플랑(르노)의 작업장에서, 바로 관리자들이 지저분한 방법으로 항상 군림하는 이 작업장에서 이러한 불쾌한 일이 일어납니다."[19] 이렇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인종차별과 비인간적인 처우로 말미암아 이주노동자 문제를 보편적 '노동계급'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점차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계 내부에서 제기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인식변화는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1973년 제36차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 대의원 대회는 처음으로 '다국적성'과 '다문화'를 고려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할 것을 토의하고 의결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국적 노동계급'의 문제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노동자'로써의 보편성 보다는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이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다.[20]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총연맹의 인식 변화는 1980년대 초가 되어서 이루어 졌다.[21] 이것은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공존'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통합'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언젠가 본국으로 귀국할 비숙련 노동자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빈곤한 계층'으로 여겨졌다. 이주노동자가 프랑스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정책은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이름아래 정당화 되었지만,[22]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

18) B. Massera et D. Grasson, *Chausson: une dignité ouvrière*, 228에서 재인용.

19) 1971년 르노-플랑 공장의 마오주의자들의 문서, X. Vigna, *L'Insubordination ouvrière dans les années 1968, Essai d'histoire politique des usines* (Rennes, PUR, 2007), 127에서 재인용.

20)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랑스 노동조합의 정책에 관해서는, 신동규, 「CGT의 이주노동자 정책: 모순과 한계, 1921-1981」, 331-336 참조.

21) 위의 글, 328.

22) *La Vie ouvrière*, 25 avril 1973.

금수준 향상을 통해 프랑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다국적성'과 '다문화성'을 고려한 노동조합의 인식변화는 1980년대에 걸쳐 확대된 이민자에 대한 통합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통합'의 대상이 아닌 프랑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통합' 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망은 이민자와 프랑스인 사이의 상호이해를 전제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의 문화, 관습, 종교적 전통을 존중하기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한편, 직업교육, 자녀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통합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파악했다.[23] 1970년대 까지 지배적이었던 '권리 평등 투쟁' 구호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했다면,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등장한 '차별철폐투쟁' 구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대상이자 주체인 이들이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구호의 등장은 이주노동자 통합의 전제가 되는 '다문화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 경제적 통합추구가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Ⅲ.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 파업, 1982-1983 : 비숙련 노동자의 파업인가 이주노동자인가?

1982년과 1983년 사이 파리 근교에 위치한 르노, 시트로엥, 탈보 자동차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파업은 대부분이 비숙련 노동자인 이주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폭발하는 사건임에 동시에, 프랑스 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장내의 인종주의 문제가 언론에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 4월 9일 르노의 플랑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자 곧 전 공정에서 생산이 멈추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작업속도를 직접 통제하기를 원했으며, 노동 강도를 높이는 유난히 반복적인 작업을 거부했다. 이것은 노동 강도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대다수가 이주노동자인 비숙련 노동자들은 여름휴가를 고향인 북아프리카에서 보내기 위해서 5주째 유급휴가를 요

23)신동규, 「CGT의 이주노동자 정책: 모순과 한계, 1921-1981」, 334.

구하였다. 4월 25일 사측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거부하고 5주간의 유급휴가만 인정하는 합의안을 제안했을 때 노동총연맹은 '한걸음 전진'이라고 평가 했으며 프랑스민주노동연맹과 노동총연맹-노동자의 힘(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ère, CGT-FO)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 합의안을 승인한 노동자들은 4월 30일에 파업을 끝낸다. [24]

르노의 플랑 공장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시트로엥의 올네-수-브아(Aulay-sous-Bois) 공장에서는 1,000여명의 비숙련 노동자들이 400 프랑의 임금인상과 생산라인의 작업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하며 일을 멈췄다. 파업이 시작되고 노동자들이 대화를 요구하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나는 검둥이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단지 노예일 뿐이다."[25] 따라서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노동 강도 약화를 요구하며 5월 31일까지 파업을 했다. 르노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동조합에 의해 '그럭저럭'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받는데 반해[26], 시트로엥에서는 어용노조인 자유노동조합연맹(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Libres, CSL)에 맞선 노동총연맹과 프랑스민주노동연맹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월 초에 파업이 주변 지역인 르발루아(Levallois)와 아니에르(Asnière)에 있는 시트로엥 공장으로 확산되자, 사측은 어용노조와 관리자들을 동원해 파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트로엥은 생산하기를 원한다!", "어린염소(Bicots: 북아프리카 원주민을 비하하는 표현)들은 모스크바로!" 등의 구호을 외쳤다.[27] 5월 말 법학교수인 장-자크 뒤페이로(Jean-Jacques Dupeyroux)의 중재를 통해 사측이 비숙련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되고, 6월1일 파업은 끝난다. 그러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1983년 봄 다시 파업이 발생한다.

1982년 6월 2일 시트로엥에서 파업이 끝나자마자 프와시(Poissy)에 있는 탈보(Talbot)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탈보는 시트로엥의 모기업인 쁘조그룹 (Peugeot Société Anonyme)에 속해있는 자동차 생산업체로 어용노조가 활동하고 있었다. 1,000여명의 비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5,400여명

---

24) R. Astruc, *Du travailleur au gréviste militant magrébin: Les grève des OS de 1982 et 1983*, Maitrise d'Histoire, Université Paris VII, 1998, 16.

25) *Ibid*. 17에서 재인용.

26) *Le Monde*, 3 mai 1982.

27) R. Astruc, *Du travailleur au gréviste militant magrébin*, 19.

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했으며 10,000여명의 노동자들은 생산을 위해 파업 노동자들과 대치했다. 파업에 참여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시트로엥과 같은 요구를 했으며, 이슬람교도를 위한 예배장소를 요구했다. 시트로엥과 마찬가지로 장-자크 뒤페이로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7월 3일, 탈보의 최고 경영자가 중재안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 파업들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 벌인 대표적인 파업이었다. 파업 노동자들은 노동조직(organisation du travail), 직업교육(formation professionnelle), 임금, 유급휴가 그리고 작업장에서 개인과 노동조합의 자유 등 전통적으로 비숙련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생산을 멈췄다. 그리나 이들 비숙련 노동자의 대부분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노동자들 이었기 때문에 몇몇 요구사항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었다. 르노의 플랑 공장에서는 아프리카에 고향을 둔 노동자들이 여름 휴가를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5주째 유급휴가를 요구했으며, 프와시의 탈보에서는 작업장에서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이슬람교도를 위한 예배장소를 요구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 파업들의 경우 – 특히 르노와 시트로엥의 경우- 언론에 주로 비숙련 노동자의 파업으로 소개되었으며 간혹 이민자가 강조되는 정도였다.[28] 파업 참가 노동자들도 이 상황이 이주노동자의 파업으로 비추어 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탈리아계 노동총연맹 간부인 엘레오노라 트레헬(Eleonora Tréhel)은 이 파업이 이주노동자 파업으로 규정되는 것을 특히 경계하면서, 언론에 의해 비숙련 노동자들의 요구가 '외국인들의 선동'으로 보도되기 전에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이 이민자가 프랑스의 공장을 닫게 만든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의 파시스트들과 인종주의자들에게 논리를 제공하고 싶습니까?"[29] 그러나 파업 노동자들은 -그리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대표성을 인정받은 노동총연맹 노동조합은[30]- '외국인'과 '이민자'를 부각시키는 행동을 외국인 혐오주의에 기반을 둔 인종주의적 차별이라고 생각

28) N. Hatzfeld et J.-L. Loubet, «Les conflits Talbot, du printemps syndical au tournant de la rigueur», *Vingtième Siècle, Revued'histoire*, n°84, 2004 /4, 158.

29) Daniel Schneidermann, "L'affrontement", *Le Monde*, jeudi 5 janvier 1984, *cité* in *Ibid.*

30) 당시 탈보와 시트로엥에는 어용노조인 자유노동조합연맹(CSL)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총연맹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파업을 이끌어 나갔다.

했으며, 이에 맞선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속된 파업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들 중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이들이 프랑스 사회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적어도 프랑스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니콜라 핫츠펠드(Nicolas Hatzfeld)와 쟝-루이 루베(Jean-Louis Loubet)에 의하면 이민문제는 협상과정에서 '부차적'인 문제였다.[31] 적어도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으로써 겪는 불평등과 '이주노동자'라는 정체성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파업의 일차적 동기는 비숙련 노동자로써 생산구조의 최하층에서 겪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이었다. 따라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부터 비롯된 파업의 쟁점을 '이주노동자의 선동'으로 축소하려는 사측의 의도에 맞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비숙련 노동자라는 계급 정체성과 그 동질감이 주는 연대의식을 강조했다. 또한 파업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의 파업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기업주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공장 외부에서 활동하는 일부 프랑스인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민자들의 파업'을 '그들의 파업'으로 규정하고 주변의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32]

Ⅳ. 계급문제에서 인종문제로: 신인종주의 담론의 형성

1976년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수상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90만 명의 실업자가 있지만, 동시에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면, 고용문제의 해결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33]라고 주장하듯,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민을 통제하려는 정부 또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극우 정당의 정치선동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정치담론 형성과 재생

31) *Ibid.* 159.

32) 파업 직전 시트로엥 올네-수-브아 공장에 입사 한 숙련 노동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증언한다. 그는 트로츠키 주의 성향의 정치정당 활동을 했으며, 공장에서 노동총연맹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총연맹 노동조합에서 수집했던 파업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인터뷰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파업 당시정황만 전한다. (시트로엥 올네-수-브아 공장의 노동총연맹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투쟁(Lutte ouvrière) 활동가들이 장악하고 있다.)

33) 손영우,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주의 성격: 이민자와 이민 2세의 사회경제적 위치」, 280에서 재인용.

산은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켰으며, 실업률 증가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저 흑인은 우리 빵을 빼앗기 위해 왔다",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등의 인종주의적 표현이 회사, 동네, 학교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34] 1980년대 이후 생산의 기계화와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대량해고와 실업률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자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인종차별에 의한 사회갈등 문제가 점점 부각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0.18%를 득표하는데 그치고, 대선에서는 500인의 후보추천 서명을 받지 못했던 민족전선(Front National)이 1983년 일부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0% 내외의 득표를 기록한 것은 인종주의적 정치담론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198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11.06%를 획득한 민족전선은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초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연속 파업은 바로 민족전선의 급부상이 이루어지기 전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1982년 시트로엥과 탈보에서 발생한 분쟁의 중재자로 나섰던 법학교수 쟝-자크 뒤페이로도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 파업 한 달 후 그는 이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사측에 권고했다.[35] 외국인 혐오주의에 의한 차별과 인종주의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가 아닌 전체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로 인식했다.

그러나 1983년 르노 플랑에서 임금문제로 비숙련 노동자들의 파업이 또 한 번 발생한 후 사회당 소속의 국무총리 피에르 모르아(Pierre Mauroy)는 이 문제를 이민문제에 연결시킨다. 그는 1월 27일 "남아있는 주요 어려움은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생겼다. 그들에 관한 문제는 내가 잘 안다. 그런데 그들은 프랑스 사회 현실을 잘 모르는 정치, 종교 조직에 의해 선동되었다." 라고

34) *Le Guide du militant de la Métallurgie CGT*, novembre 1981, n° 164, 6.

35) N. Hatzfeld et J.-L. Loubet, «Les conflits Talbot, du printemps syndical au tournant de la rigueur», 158.

주장하고 이러한 담론은 수많은 일간지에 의해 재생산 된다.[36] 또한 내무부 장관 가스통 데페르(Gaston Defferre)는 이 분쟁을 언급하면서 '근본주의자(intégriste)'와 '시아파교도(chiites)'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파업 노동자들의 종교적 과격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슬람 수니파 지역인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데페르의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주노동자 파업으로 한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계급문제를 이민문제로 치환하면서 보편적인 노동문제를 이민자의 특수한 문제로 바꾸어 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1982년 파업 당시 파업에 반대하는 사측의 태도에서 드러나 있었다. 따라서 파업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대량생산 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조건 악화문제를 이민자 문제로 제한하는 기업의 논리에 단호히 대처했다. 노동계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총연맹 금속연맹 위원장인 앙드레 생종(André Sainjon)의 주장에 잘 드러난다. 그는 시트로엥의 파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이민자들의 파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분쟁의 범위를 엄청나게 축소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서[37], 1982년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비숙련 노동자 파업이 '이민자들의 파업'이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민자 파업'이라는 용어가 분쟁의 범위를 이민자로 제한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과도한 노동강도로 요약되는 사회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파업이 '노동자 파업' 또는 '비숙련 노동자의 파업'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Ⅴ. 결론

980년대 초, 르노, 시트로엥, 탈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파업은 1970년대 경제위기 이래로 지속된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들이 프랑스인들의 일자리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던 시기에 발생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과 인종주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이 변화하는데 전환점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는 이주노동자

36) *Nord Eclaire*, 27 janvier 1983; *Le Monde*, 30-31 janvier 1983.

37) A. Sainjon, Préface à Floriane Benoit, *Citroën, Le printemps de la dignité* (Paris: Editions sociales, 1982)

들이 곧 본국으로 돌아갈 부가노동력에서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시기로, 이미 프랑스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가족 결합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한편 이 파업을 거치면서 이주노동자가 프랑스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선동하는 국민전선이 확고한 지지기반을 얻기 시작했다. 극우정당의 약진 이면에는 이질적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이 '공화국'의 가치를 공격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던 프랑스의 사회, 정치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신인종주의적 담론이 형성되는 동시에 극우정당의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 분야는 196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 따라서 비숙련 노동자인 동시에 북아프리카 출신으로써 이주노동자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산업의 파업참여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비숙련 노동자로 규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반면에 기업과 정부는 파업의 확산을 막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이민자의 문제로 제한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바로 노동자 파업이 이민자의 투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인종주의의 담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즉 파업에 대한 모르아의 발언은 생물학적 '인종' 구분을 통한 종래의 인종주의가 문화적 차이에 입각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신인종주의적 담론으로 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탈식민화(décolonisation) 시대에 이르러 인종주의는 프랑스를 침략하는 이질적인 '문화'를 배척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들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의 피해자가 아닌 문화적 '침략자'로 규정하게 된다. 인종주의에 의해 '계급문제'가 사라진 것이다.

노동조합에 의해 강조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투쟁(contre la discrimination)' 구호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으로써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계급투쟁' 이념아래 '이주노동자' 문제에 접근했던 종래의 정책에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이 근본적으로 인종주의와 싸우는데 적합한가? 최근의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인종'이 아닌 '다문화'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민자들의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는 것을 '침략'으로 인식하면서 적대시 하는 것이다. 1989년 프랑스 공화주의의 상징인 정교분리원칙과 이슬람 문화가 충돌한 '히잡사건'이 발생했을때 신우익의 이론가인 알랭 드 브누아(Alain de Benoist)는 역설적이게도

히잡을 쓴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낼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이러한 시각은 무슬림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다름'을 강조하고 극대화 시키려는 신인종주의적 전략의 기본 논리였다.[38] 이것은 1980년대 초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민자들의 파업으로 제한하면서 사용한 논리와 유사한 것이었다.

인종주의를 지배에 이용하는 편에서는 사회문제를 이민문제의 테두리에 가두고 그들의 저항을 무례한 이방인들이 민주주의사회의 가치를 뒤흔든다고 선동한다. 2005년 파리의 방리유 사건에서도 극우와 우파는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불태우는 행위를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는데 실패한 '이민2세대'들의 폭력 행위로 규정한데 반해 노동조합, 좌파정당 및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노동과 교육에서 소외된 서민계층의 저항으로 파악하고 보편적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의 분노표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이주노동자 또는 이주자가 연관된 문제를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민자들의 특수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따라 인종주의와 싸우는 전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 노동자성을 외면하는 것이 혹시 새로운 인종주의적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되물어 보며 이 글을 마친다.

충북대, jajusdk@naver.com

38) 박단, 「프랑스 : 히잡사건」,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179.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Class and race

SHIN Dongkyu

In France, workers' insubordination which erupted into a general strike in 1968 has persisted in the beginning of 1980's and unskilled workers (ouvriers spécialisés) always remained holder of this disobedience. A series of strikes which broke out in the French motor industry from 1982 to 1983 showed the continuity of workers' insubordination. This labor dispute took place in the factories located in Paris suburbs such as Renault-Flin, Talbot-Poissy and Citroën-Aulay-sous-bois, in which migrant workers, mostly north African-born, were charged in simple and repetitive production tasks. These underprivileged workers in the vertical hierarchy initiated collective actions and vigorous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in order to claim higher salaries and an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sometimes more religious liberty for Muslim practitioners. This situation reflects the new pattern of immigration flow beginning with Evian Accords signed in 1962 by France and FLN putting an end to Algerian war and promoting a cooperative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In this respect, the rise of North African immigration has become evident in France and the demography of the immigration had a wider impact during the 1980's. As the motor industry is considered as a window on the French society, these strikes generated important political discussions. This situation attracted public attention, because of a high social tension caused by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age system which subordinates workers to a production system based on the scientific management. The more this event was broadcasted on television, the more it had an impact on French society, revealing the double identity of strikers: unskilled workers and migrant workers from North Africa. Much as the impact of social tension, strikers were considered as foreign intimidators who threatened

French culture and republican idea. By separating them from working class and unity of unskilled workers, opponents of social conflict limited the range of these strikes to migrant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es. Thus, this showed the development of “Neo-Racism” discourse in France during the 1980’s.

주제어: 이주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파업, 자동차 산업, 신인종주의
Key Words: Migrant workers, Unskilled workers, Strike, Motor industry, Neo-Racism

■ 지금 여기 ■

2012년 미국 오바마 정부, “불법” 외국인의 자녀들, 그리고 드림법안(The Dream Act,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현재

권 은 혜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서 미국에 처음 들어온 젊은이들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의 추방을 영구히 유예할 수 있는 정책(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을 발표했다.[1] 본래 오바마 행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은 200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미 의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드림법안의 통과였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개발, 원조, 교육”법안을 지칭하는 드림 법안은 미국 교육을 받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이민의 멍에를 쓰고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이후 국외추방의 위협을 받고 사는 외국인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주어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드림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정책이었고, 민주당이 행정부와 양원을 모두 장악하던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는 실현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2010년, 드림법안은

1) 이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이민자의 자녀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둘째, 정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발표시점에 미국에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교육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미국 연안 경비대나 미국 군대를 명예롭게 퇴역한 경우, 이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넷째, 중죄로 기소되거나 중대한 경죄 혹은 복수의 경죄로 기소된 적이 없어야 하며, 국가와 공중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30세 이하여야 한다. Memorandum from Janet Napolitano,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Exercising Prosecutorial Discretion with Respect to Individual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June 15, 2012, http://www.immigrationpolicy.org/sites/default/files/docs/Napolitano-memo-6-15-2012.pdf [검색 2012년 12월 14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찬성표를 더 많이 얻기는 했지만 소수파의 의사진행방해와 무관하게 통과될 수 있는 60표를 획득하지 못했고 야당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의사진행방해를 사용해 드림법안 통과를 좌절시켰다. 2012년 6월 15일에 발표되어 현재 집행 중인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은 십년 넘게 표류 중인 드림법안을 대신할 오바마 행정부의 대안이었다. 비록 외국인 자녀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의 법적 지위로 가는 길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책에 따라 이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유예 신청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 추진 이면에는 드림법안의 의회 표류에 좌절하지 않고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커밍아웃"을 결심한 젊은 이민자들의 운동이 있었다.[2]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 운동집단으로는 젊은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지역 모임 네트워크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nited We Dream)이 있다.[3] 2009년에 결성된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성년에 가까운 이민자 자녀들과 젊은 이민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미국에 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유권자들부터 상원의원에 이르는 미국인들에게 호소하는 운동을 벌였다. 스스로를 드리머(DREAMers)라고 부르는 '유나이티드 위 드림'의 회원들은 2년 전 커밍아웃 행사를 공개적으로 열었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류 기록없는, 두려울 것 없는(undocumented, unafraid)"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이민국에 저항했다. 2010년 드림법안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방해로 통과되지 못하자, 드리머들의 의지는 더 강해졌다. '유나이티드 위 드림'의 개비 파체코Gabby Pacheco는 상원 의장 해리 리드Harry Reid를 만나는 자리에서 행정부 수반의 권력으로 젊은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아줄 것을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리드는 이에 포옹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2011년 3월에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멤피스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 집회를 벌이고 대통령에게 추방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2) Julia Preston, "Young Immigrants Say It's Obama's Time to Act," November 30, 2012,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2/12/01/us/dream-act-gives-young-immigrants-a-political-voice.html?pagewanted=all&_r=0.

3) http://unitedwedream.org/about-us/history/

2011년 초까지 오바마 행정부 산하에서 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추방되고 있었다. '유나이티드 위 드림', 그리고 추방정책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던 라티노/히스패닉 공동체 조직들의 추방 정지 요청에 화답해,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여름부터 범죄자 추방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추방정책 실행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2012년 봄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12개 도시에서 집회를 벌였다. “불법”이라 “서류”가 없는 이들에게 집회 장소로 비행기를 타거나 차로 운전하는 것 모두가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들의 공개적이고 정치적인 행보는 대선정국의 흐름 속에서 젊은 이민자들의 추방 방지와 법적 지위 보호 문제를 주요 이슈로 만들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겨냥해 쿠바계 이민자의 후손이기도 한 플로리다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2012년 4월에 젊은 이민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다.

'유나이티드 위 드림'이 루비오의 공약을 지지하고 나서자 백악관은 이 단체와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4월 중순에 백악관 직원들은 워싱턴의 한 교회에서 '유나이티드 위 드림' 대표들과 회의를 가졌다(이 회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라 백악관에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백악관 측은 대통령에게 추방 방지 명령을 공표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유나이티드 위 드림' 대표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5월 말에 이들은 거의 백 명에 달하는 법대 교수들과 법학자들의 서명을 모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 서명한 법대 교수들은 대규모 추방 연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명시했다.[4]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시민 불복종으로 새로운 저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6월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초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었다. 6월 15일, 오바마는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을 발표했고 드리머들은 이를 그들의 승리로 받아들였다.[5]

비록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이 젊은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4) Julia Preston, “Students Press for Action on Immigration,” May 30, 2012,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2/05/31/us/students-press-for-action-on-immigration.html?_r=1&emc=eta1.

5) 유나이티드 위 드림의 활동은 다음의 기사에 근거하여 기술했다. Preston, “Young Immigrants Say It’s Obama’s Time to Act.”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 아동으로 온 개인들에 대해 검찰심사적 신중함(prosecutorial discretion)을 실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발표날에 공개된 국토안보장관 자넷 나폴리타노의 메모는 이 정책의 실행으로 이민법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민법은 강하면서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 법들은 개별 예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실행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 이 법들은 생산적인 젊은이들을 제거해 그들이 살지도 않았거나 그 언어도 말할 줄 모르는 나라들로 보내기 위해 고안되지도 않았다. 사실 이 젊은이들은 이미 중요하게 이 나라에 기여해왔다. 이미 다른 영역에서 실행된 바 있는 검찰심사적 신중함은 여기서 특별히 정당화될 수 있다.”[6)]

시민권이 없지만 드리머들이 단체 행동을 취한 덕분에, 오바마 행정부는 젊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방지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고 이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오바마 지지로 이어졌다. 오바마의 대선 경쟁자였던 공화당 미트 롬니는 드림법안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그의 대안이 “[불법 이민자들] 스스로의 추방(self-deportation)”이라고 말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제 드리머들은 오바마 대선 2기에서 드림법안이 미국의 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lucydiamond@naver.com

6) Memorandum from Janet Napolitano,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Exercising Prosecutorial Discretion with Respect to Individual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59-65

■ 지금 여기 ■

알제리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전쟁

이 재 원

I. 프랑스 전(前) 국방부 장관의 '주먹감자 먹이기'

지난 2012년 10월 30일, 프랑스 의회채널의 '공공의 상원(上院)(Public Sénat)'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대중운동연합당(黨)(UMP.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출신의 전(前) 국방부 장관 제라르 롱게(Gérard Longuet)는 시청자들에게 '주먹감자(팔뚝을 치켜들며 상대를 조롱·야유하는 몸짓)를 먹였다.' 방송이 끝난 후 시그널 음악이 나오고 마이크가 꺼진 가운데 그는 이 놀랄만한 손동작을 했는데,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롱게는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주의가 행한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아에프페(AFP) 통신사의 통신문에 대해 반응했다고 한다. 현재 대중운동연합의 상원의원인 롱게는 "프랑스는 식민화 시기에 알제리를 지배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알제리 점령 이후 182년이 지난 지금 역사를 다시 구성한다고 사태가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프랑스와 알제리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원하지만 매번 서로가 만날 때마다, '식민화 재판'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1]라고 주장했다. 그의 행동은 '일반적'이고 '친근한' 행동이었으며, "분노한 한 사람의 개인적 행동일 뿐"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자신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1) Benoit Tessier, "Bras d'honneur de Gérad Longuet à la télé: Un geste de mauvaise humeur bien connu des Français", *L'Express*, le 31 octobre 2012.

했다.[2)]

사회당 소속의 상원의장인 벨(Jean-Pierre Bel)은 공식성명을 통해 롱게의 알제리 정부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비난했다. 벨 의장은 12월 말(12.19-20)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발생한 전 국방부 장관의 이러한 행동은 '기억의 전쟁 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에 새롭게 당선된 사회당 대표 데지르(Harlem Désir)는 그의 트위터에 "제라르 롱게의 행동은 불행하게도 공화주의적 논쟁을 너무 자주 훼손시키는 일부 우파의 저급한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알제리 우애협회(Cercle d'amitié franco-algérien) 회장인 벤아메드(Adam Benahmed) 역시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친구인 알제리 국민을 향한 무례하고 불량스러우며 도를 벗어난 분노를 자아내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지난 6월 당선된 극우정당 민족전선(FN)의 질베르 콜라르(Gilbert Collard) 의원은 "그 주먹감자 먹이기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자들의 얼굴에 한방 먹일 만큼 충분히 언론에서 과장해 떠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롱게의 행동을 두둔했다. 롱게의 정당인 대중운동연합 측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3)]

II. 알제리전쟁을 둘러싼 기억의 투쟁

롱게의 행동과 이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알제리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한창일 때 나온 것이었다. 연말로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을 몇 주 앞둔 지난 10월 25일

---

2) '프랑스령 알제리(Algérie française)'를 주장하는 극우단체 옥시당(Occident)에서 활동했던 제라르 롱게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10년 3월 상원의 대중운동연합 대표였던 그는 반차별평등투쟁 고위위원회(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 위원장에 알제리 출신인 사회당의 말렉 부티(Malek Boutih)보다는 '전형적인 프랑스인'을 임명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으며, 같은 해 5월 극우 주간지인 미뉘트(Minute)에 극우정당 민족전선(FN)의 당수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그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과는 달리 여러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이제부터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상대자라고 평가했다.

3) "Bras d'honneur : Longuet assure avoir voulu s'opposer au "procès de la colonisation" en Algérie", *Le Monde*, le 1er novembre 2012.

프랑스 상원은 사회당에 의해 발의된 법령, 즉 1962년 알제리전쟁 휴전일인 3월 19일을 전쟁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의 날(journée nationale du souvenir)'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4] 이 법안에 대해 좌파 정당들은 찬성했고, 중도파와 우파정당들은 반대했는데, 결국 181표의 찬성과 155표의 반대로 법안은 승인되었다. '알제리전쟁 참전용사 전국연합'(350 000명으로 구성된 FNACA)은 이 입장에 찬성했다. 대중운동연합의 상원의원들은 3월 19일이라는 날짜를 선택하는 것은 분열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휴전 이후 수 천 명의 유럽인과 프랑스에 협력한 알제리인인 하르키(harki)들이 처형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재소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공화국은 1961년 10월 17일 파리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알제리인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한다"고 발표하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프랑스 현대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알제리전쟁, 그 가운데 오랫동안 은폐되었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소위 '1961년 10월 사건'에 대해 프랑스 국가수반이 그 실체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참회의 발언'을 행한 것이다. 역사가 리우(Jean-Pierre Rioux)는 "공화국은 통찰력 있게 이 사실들을 인정했다"고 논평했으며, 이 사건의 61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당 출신의 파리 시장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는 "알제리 국민에 대한 존중은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진실은 1961년 10월 17일 독립의 권리를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을 때 많은 알제리인들이 살해되어 센강에 던져졌다는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반면에 알제리전쟁에 대해 전혀 다른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중운동연합 출신의 전(前)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이러한 '참회의

4) 이때까지 알제리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한 추모의 날은 오직 하나만 존재했다. 파리 브랑리 강변도로(Quai Branly)에 전쟁동안 사망한 24 000명의 프랑스 군인을 추모하는 기념물이 설립될 당시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이 제정한, 전쟁과 아무런 관련 없는 12월 5일이 그 날이다. 이재원, 「기억의 전유와 기억의 투쟁: 알제리전쟁 기념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프랑스사 연구』, no. 19(2008), 225-228.

선언'들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표하며 "레지스탕스와 같은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전(前) 수상인 피옹(François Fillon)은 '거의 끊임없이 신경쇠약' 상태에 있는 프랑스의 '지속적인 죄의식'에 유감을 표했으며, 대중운동연합 원내대표인 자콥(Christian Jacob)은 "공화국의 경찰과 공화국 자체를 문제시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콥은 "올랑드는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하며, 기억의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는 국민 통합에 있어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사회당 대표 데지르(H. Désir)는 "그의 발언을 통해 자콥은 1961년 10월 17일 밤 공화국의 가치와 모든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한 시위진압의 파렴치한 옹호자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서고의 개방과 함께 역사가들은 파리 경찰청장인 모리스 파퐁(Maurice Papon)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알제리인의 평화적인 시위의 폭력적인 진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콥은 파퐁에게 엄청난 명예회복을 제공했고 참을 수 없는 역사의 날조에 탐닉했다"며 단호한 어조로 자콥을 비난했다.[5)]

알제리전쟁이라는 과거 식민주의 역사, 특히 프랑스 현대사에 있어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한 '1961년 10월 사건'을 둘러싼 '기억의 투쟁'은 과거를 인식하는 현대인의 모습, 과거의 식민지를 인식하는 현재 서구열강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개요와 오랫동안 프랑스 사회에서 은폐되고 망각된 원인,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건을 둘러싼 '기억의 전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기억의 의무와 서로 다른 기억들 간의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III. 1961년 10월 17일 사건: 의도된 망각과 기억의 부활

알제리전쟁이 종결되기 5개월 전인 1961년 10월 17일, 서유럽 현대사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학살이 파리에서 벌어졌다. 이날 알제리인들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선포된 야간통행금지 조처에

5) "Hollande reconnaît la répression du 17 octobre 1961, critiques à droite", *Le Monde*, le 17 octobre 2012.

반대하며, 동등한 권리와 알제리 독립을 요구하며 3만 여명의 파리 거주 알제리인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파리 경찰청장인 모리스 파퐁이 계획한 시위진압이 이루어졌다. 이 비폭력적인 저항에 대한 경찰의 진압, 즉 폭력적인 국가의 탄압은 프랑스 역사의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만 천명의 체포, 수십 명, 아니 아마도 수백 명의 학살[6], 그 중 다수는 센강에서 익사했으며 총에 맞아 혹은 구타로 숨졌다. 국가가 자행한 식민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폭력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사건의 부당함을 밝혀내고 지속적으로 공론화한 지식인과 여러 단체들의 활동이 있었다. '망각에 반대하는 1961년 10월 17일 협회(L'association 17 octobre 1961: contre l'oubli)'는 각계 인사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으며, 그 결과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기념의 장소[7]가 탄생할 수 있었다.

1961년 10월 17일 시위에 대한 대규모 진압과 학살의 기억은 오랫동안 프랑스 역사에서 침묵당했다. 역사가 비달-나케(Pierre Vidal-Naquet)는 그 원인에 대해 '수수께끼(énigm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프랑스 정부의 의도적인 침묵에 주목했다. 이 진압을 계획하는 데 모든 정부기관과 책임자들 - 파리 경찰청장인 파퐁, 수상인 드브레(Michel Debré), 내무부 장관인 프레(Roger Frey), 비록 사건을 보고받고 진노했지만 대통령인 드골(Charles de Gaull) - 이들 모두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철저히 은폐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침묵을 강요하고 망각을 조장하기 위해 권력기관은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사용했다. 언론에 대한 검열, 진압 당사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나 사면령과 같은 법적 조처, 사료에 대한 접근 차단, 관련 자료의 '처분(purification)', 이 모든 것이 1970년대 말까지 이 사건의 은폐에

6) 20여 년 전부터 이 사건의 정확한 알제리인 사망자 수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정부가 구성한 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수치와 전문역사가들의 그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사망자수와 관련해서는 Jim House et Meil MacMaster, *Paris 1961. Les Algériens, la terreur d'Etat et la mémoire* (Paris: Tallandier, 2008), 203-224를 참조하라.

7) 프랑스 정부는 1961년 사건에 대한 규명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2001년 이 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 동판을 파리의 생미셸(Saint-Michel) 다리 위에 설치했다.

기여했다.[8] 이에 더하여 프랑스 좌파의 상대적 무관심도 사건의 망각과 은폐에 기여했다. 소수 정당인 통합사회당(Parti Socialiste Unifié)은 정치적으로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1960년에 창설된 군소정당이다.[9] 통합사회당과 프랑스전국학생연맹(UNEF), 그리고 소수의 프랑스인들만이 알제리 독립 구상에 반응했다.

모리스 파퐁의 독일 점령기 하에서의 과거와 1961년의 그의 역할 사이의 연관성[10]을 밝힌 데넹크스(Didier Daeninckx)의 추리소설 『기억을 위한 살인(*Meurtres pour mémoire*)』(Gallimard, 1984)과 에노디(Jean-Luc Einaudi)의 『파리전투(*La Bataille de Paris*)』(Seuil, 1990) 같은 저서들은 1961년 사건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알제리 이민자 자녀들에 의한 '기억의 이름으로(Au nom de la mémoire)' 협회의 창립과 함께 알제리전쟁과 1961년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점령기 시절 지롱드도(道) 사무국장으로 반인륜범죄 공모 여부를 단죄하기 위한 퐈퐁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을 위해 파퐁이 책임자로 관여한 1961년 10월 17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1997-1998년 파퐁 재판 때 증인들은 알제리에서(1956-1958년 사이 파퐁은 알제리 콩스탕틴(Constantine)의 도지사를 지냈다) 그리고 파리 경찰청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중에는 1998년 5월 20일자 『르몽드(Le Monde)』의 논단에 10월 17일 사건과 관련하여 '학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에노디(J.-L. Einaudi)도 포함되어 있었다. 파퐁은 명예훼손죄로 에노디를 고발했으나 파리법정은 '학살'이라는 단어는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결했다.

---

8) 역사가 망스롱(Gilles Manceron)은 『학살의 세 가지 은폐』라는 저서를 통해 1961년 사건의 조직적인 망각에 기여한 메커니즘들에 대해 설명했다. Paulette Péju, Marcel Péju, Gilles Manceron, *Le 17 octobre des Algériens, suivi de La triple occultation d'un massacre* (Paris: La Découverte, 2011).

9) 통합사회당(Parti Socialiste Unifié)은 정치적으로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1960년에 창설된 군소정당이다.

10) 독일 점령기의 기억과 알제리전쟁의 기억이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어 있음을 드러낸 국내논문으로 김용우, 「식민의 기억, 점령의 기억: 1961년 10월 사건과 모리스 파퐁 재판」, 『서양사론』, no. 108(2011)을 들 수 있다.

IV. 기억의 의무와 기억의 화해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2001년 파리시장이 생미셸 다리위에 기념동판을 새긴 행위는 1961년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파리 근교 지역에서도 유사한 추모행위가 있었으며, 지난 2011년 사건 50주년에 맞춰 파리 서쪽 낭테르(Nanterre)에 위치한 오드센(Hauts-de-Seine) 지역 도청 앞길을 '10월 17일 대로(Boulevard du 17-Octobre-1961)'로 명명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7일 알제리뿐 아니라 프랑스의 기억이기도 한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혔고 그 실체를 인정했다. 비록 단 몇 줄의 성명에 불과했지만 프랑스 대통령의 발표는 그의 전임자들의 침묵과 국가의 학살행위를 부정했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961년 10월 17일의 잊혀진 희생자들은 지금도 프랑스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거주하며 살고 있다. 프랑스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정의(justice), 즉 '기억의 정의'를 빚지고 있다. 1961년 10월 17일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지중해를 사이에 둔 두 나라 사이에 이제는 어느 정도 '누그러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2년 알제리는 프랑스에게는 아픈 상처인 독립 50주년을 기념했다. 이 기념의 언저리에서 오직 진실만이 화해를 보장해줄 것이다. 복수도, 후회나 참회도 아닌 진실에 대한 정의(justice)와 두 민족 간의 화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프랑스-알제리의 새로운 우애는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 사학과, ljwdavid@yonsei.ac.kr

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66-74

■ 지금 여기 ■

"성실 근로" 이주노동자?[1)]

이 태 정

I.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2012년 10월 11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다음과 같은 플랭카드가 내걸렸다:

<대한민국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최초 재입국>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에 따라 재입국 취업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113명이 이 환영인사의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지난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 동안 "이미 검증된 숙련인력"으로, 향후 4년 10개월 동안 "불법체류 및 사업장 변경 등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가 되었다.[2)] 외국인들의 '성실함'의 '법적' 규정은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1)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홈페이지(http://migrants.jinbo.net) 자료실과 정영섭 사무국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2) "'성실' 외국인 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연합뉴스, 2012.10.11.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 /10/10/0701000000AKR20121010215500004.HTML?source=rss.(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성실 외국인근로자 첫 재입국", 한국경제TV 홈페이지 http://news.wownet.co.kr/news/vodnews/view.asp?bcode=N070 40000&mseq=275&vodnum=125308(검색일: 2013년 1월 1일).

System)>이 실시된 지 만 8년 만에 새로이 도입된 정책으로서,[3)]
고용허가제 법률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특별히 허용되는 일종의 특례고용허가이다.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성실성’을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고용허가제(E-9)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2.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2-1. 휴·폐업 등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3. 사업주가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
   3-1. 농축산 어업이나 3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
   3-2. 재입국시 원래 사업장에 취업
4. 체류기간 내에 자진 귀국 필수

위의 이 요건에 하나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간 고향 방문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취업할 수 있다.[4)]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특혜’도 주어진다. 즉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연령제한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요컨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으려면 ‘이직경력 전무함’을 증명하고, ‘사장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 된다.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2012.7.2일자) 한 달 후,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지정알선제)를 함께 운영·확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재입국 취업을 늘려나가겠다고

3) 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6호, 2012. 2. 1. 공포, 7.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85호, 2012. 5. 14. 공포, 7. 2. 시행).

4)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진귀국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우대방안 10문 10답>에서 발췌, 정리. http://www.hugkorea.or.kr/boad/bd_news/1/egoread.asp?bd=1&typ=0&val=0&itm=&txt=&pg=1&seq=586(검색일 2013년 2월 10일)

발표하였다.[5)]

반면 문제점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입국을 신청하고 출국한 이주노동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유출국 중 하나인 중국이 이 제도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2년 9월, 중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재입국 신청 접수를 중단하였다.[6)]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 간에 허락되는 노동력 이동 제도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내 입법과정을 통해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고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MOU를 체결한 나라들과의 협의를 간과하였고, 그것이 중국 정부의 불만을 산 것이다.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를 둘러싸고,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II. '고용허가'와 노동자의 권리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현재 한국 정부의 유일한 이주노동자 도입·운영 제도로서,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을 일원화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재외 동포에게 적용되는 특례고용허가제와 일반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반고용허가제로 나뉜다. 전자에는 방문취업(H-2) 비자가 적용되며, 후자는 고용허가(E-9) 비자가 적용된다. 방문취업의 경우, 일반고용허가와 달리 업종 간 이동이 자유롭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매년 국내 인력 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이주노동자 도입 업종, 규모를 결정한다. 기본원칙은 "정주화, 인종갈등, 문화・종교적 마찰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이 없도록 경제활동인구의

5) "성실 외국인 재입국, 시행 한 달 만에 1,253건 고용허가", 고용노동부 외국인정책과 2012. 8. 3. 보도자료,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42789(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6) "상대국과 동상이몽…'성실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도'", 축산신문 2012. 11. 28일자. http://www.koreapork.or.kr/ sub2_view.html?number=32022&Ncode=pignews(검색일: 2013년 2월 10일)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규모 상한을 운영한다”[7]고 정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총 1,445,103명이며, 이 중 15.93%를 차지하는 230,237명(미등록 체류 제외)이 일반고용허가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8] 아래 <표 1>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 계획과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계획안은 물론 실제 이주노동자 고용 현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고용허가제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 계획 및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도별 도입계획	25,000	38,000	35,000	49,600	72,000	17,000	48,000	62,000	62,000
연도별 고용현황	3,167	31,659	28,976	33,687	75,024	63,323	40,457	49,210	46,655

※ 자료: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 및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연도별 자료 종합.
※ 고용허가제 실시가 2004년 8월부터였던 관계로, 2004년도의 도입계획과 고용현황의 차이가크다.
※ 2009년도에 급감했던 이유는 당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반영, 산정했기 때문.

2013년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9년 째가 되는 해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수요 및 고용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제도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UN 등 국제기구가 내린 평가를 인용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한 안정적인

7) “올해 외국인 근로자 10만5천명 도입”,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2006. 3. 14. 보도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PS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eps.go.kr/eo/NotiLst.eo(검색일: 2013년 2월 10일)

8) “2012년 12월 통계월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이주관리 시스템"임을 강조한다.[9] 이에 반해, 이주노조(migration trade union)를 비롯한 이주노동자운동 및 지원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보장하는 노동관계법 및 노동 3권은 형식적일 뿐이며,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는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취업업종은 3D로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해,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 노력 없이 이주노동자에게만 업종 변경 및 사업장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법안에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10] 즉, 고용주는 이직을 희망하는 이주노동자 중에서 적합한 인력을 고를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업종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정보 없이 고용주가 선택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규제 조항에 대한 갈등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이 결성되면서 <노동허가제(Working Permit System)>를 축으로 하는

9) 2012년 8월 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8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가 강조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허가제를 '아시아의 선도적 이주관리 시스템(Pioneering a system of migration management in Asia)'으로 평가(ILO, '10.9월)", "부패방지 및 척결(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in the Public Service)' 분야의 혁신성 인정하여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여"(UN, '11.6월), "고용허가제는 내·외국인 차별을 없앤 제도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준수하고 있다"(전북대 설동훈 교수)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고용허가제 시행 8년!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로 정착",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012. 8. 9. 보도자료)와 토론회 발제문을 참고.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main.jsp(검색일: 2012년 12월 23일).

10) "2012.8.1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구직자가 사업장에 연락을 할 수 없고 사용자의 연락에 의허여 채용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대하고, 사업장 변경기간 중 가급적 그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 취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알선에 따른 사용자의 면접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2012. 6. 4) 일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1996년 1월 노동부는 <외국인산업기술연구생제도> 폐지 및 <제한적인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다. 제한적 노동허가제는 산업기술연수생들에게 체류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해주고, 연수생 자격을 노동자로 변경하여 노동자로서 국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침은 당시 산업연수생 관리 주무 부처이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00년에는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족, 공대위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 청원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관련 기관 및 부처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 마침내 2003년 8월, 노무현 정권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그동안 외노협, 공대위, 민주노총, 민변 등이 주장하던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채였다.[11)]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지금도 여전히 고용허가제의 민감한 부분이다. 법적으로는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12)] <표 2>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계획하거나 신청한 사유를 조사한 것이다.

---

11) 고용허가 도입 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고용허가제 법의 제·개정 과정」(2009)을 참고.

12) 고용허가제법률에서 허용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한한다. 직장을 옮기고 싶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알선한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는 체류허가 기간 중 3번까지만 허용된다.

<표 2.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이유	비율(%)
일이 너무 힘들어서	28.4
정당한 수당 지급하지 않아서	22.3
기숙사, 식사, 작업장 시설 불편	13.1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	12.9
임금체불	10.3
건강상 이유	9.1
산업재해의 위험 때문에	3.8
합계	100.0

※ 자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2011).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주노동자가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강도이다. 이주노동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28.4%),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해서(22.3%), 기숙사, 식사, 작업장 등 시설이 불편해서(13.1%), 그리고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12.9%) 및 임금체불(10.3%) 때문에 일자리를 옮기고 싶어 한다. 요컨대, 사업장 이동의 주요 원인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기보다는 노동조건 및 노동자로서의 권리 침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이직을 원하지만 이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이직에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단이탈'을 하거나 이직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실근로 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는 '불법체류 단속'에 민감한 정부가 사업장 이동 제한이라는 논쟁적인 조항을 이용하여 미등록 체류자 정리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성실근로 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근로자의 성실함'을 평가한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성실함'은 이직 경력, 그 중에서도 직장을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이주노동자가 경력을 인정받고, 몸값을 올려 이직하는 것은 더욱 더 꿈같은 일이 되었다.

III. 체류는 장기화되나 ‘장기체류’는 불법

<성실근로 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는 이주노동자 고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규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는 일종의 타협안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 외국인력의 도입 방안에는 이 <성실근로 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를 통한 고용 쿼터를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농축산어업, 10명 이하 영세 제조업 사업장 및 뿌리 산업에 대한 고용인원을 상향하고, ‘성실근로자’가 취업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30인 규모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13] 과연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고용허가제의 채찍이 ‘고용연장’이라는 당근이 될 것인가? 더불어 정부가 내세운 ‘브로커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주노동자 보호’, ‘정당한 사업장 이동을 방해하는 고용주 처벌’ 등 제도 개선 효과는 두고 볼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장기체류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단기순환원칙으로 운영된다. 반면 <성실 근로 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 및 <특별 한국어 시험제도> 등의 재입국 취업제도는 단기순환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재입국 취업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해졌다. 장기체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장기체류 및 정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13) 고용노동부 외국인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제2012-250호(2012. 9. 19).

가족재결합과 같은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14] '권리 없는' 체류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고용허가' 기회의 확대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예외상태'가 아닌 상태로 자신의 삶을 기획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조치를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한양대 사회학과, pop92@daum.net

14) 정부가 2012년 11월 28일 발표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이 '다문화' 지향을 우선시한 것에 비해,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 전치제도(외국인이 일반 귀화 또는 간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를 도입하면서도,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위원회,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1), 국회다문화사회포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2012) 등을 참고.

이민・인종연구회 회칙

제정: 2009년 2월 16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민인종연구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ity Studie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이민인종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 회는 회장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2012년 6월 14일 개정

제1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불가능하다.

2) 서평의 경우, 각주를 포함한 투고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3) 『 』(전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4)「 」(전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예3).

2) 서양어, 동양어, 한국어 모두 인용 문헌의 페이지 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1) 홍길동√편,√『서양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2), √12.

(예2) 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서양고대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6),√12.

(예3)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and√New Controversies*√(London√&√New√York:√Routledge,√1998),√12.

(예4)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

l√Imperialism√under√the√Early√Stuarts,”√A.√Fletcher√&√P.√Roberts,√eds.,√*Religion,√Culture,√and√Society√in√Early√Britain*√(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94),√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호레이쇼√얼져와√성공신화」,√『미국사연구』,√4집√(1996),√12.
홍길동,√『프랑스√근대사√연구』√(서울:√길동출판사,√1998),√12.

(예2) 木畑洋一,√『帝国のたそがれ:√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東京:√東京大学出版会,√1996年).

(예3)　草光俊男,√「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史学雑誌 』,√3 号√(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Paul√Tillich,√*Systematic√Theology*,√3√vols.√(Chicago:√Chicago√University√Press,√1951),√9.

(예2)Michel√Vovelle,√*La√Révolution√contre√l'Eglise-De√la√Raison√à√l'Etre√Suprême*√(Paris:√Gallimard,√1988),√12-13.

(예3)Michael√Schneider,√*Streit√um√Arbeitszeit.√Geschichte√des√Kampfes√um√Arbeitszeitverkurzüng√in√Deutschland*√(Köln:√Suhrkamp,√1984),√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James√Eayrs,√“The√Political√Ideas√of√the√English√Agrarians”,√*Canadian√Journal√of√Economic√and√Political√Science*,√18-3(1952),√287.

(예2)Serge√Bianchi,√“Les√Curé√Rouges√et√la√Révolution√Française,”√*Annales√ Historiques√de√la√Révolution√Française*,√249(1982),√364.

(예3)J.√Kocka,√“Zurück√zur√Erzählung?√Plädoyer√für√Historische√Argumentation,”√*Geschichte√und√Gesellschaft*,√10(1984),√395-408.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서양√문화사』√(서울:√길동출판사,√1998),√13.

- 홍길동,√같은√책,√25.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예)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age√of√Labor√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120.

- Ibid.

- Ibid.,√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서울:√길동출판사, √1998),√13.

→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15.

(예2)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age√of√Labor√from 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120.

→ 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 E.√J.√Hobsbawm,√강명세√역,√『1780년√이후의√민족과√민족주의』√(서울:√길동출판사,√1994), 30.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10)서평 형식 및 표기(안)

√ 서평에는 따로 제목을 달지 않는다.
√ 해외 문헌인 경우, 제목은 원서 그대로, 본문에는 번역 제목을 명시한다.
√ 본문의 기본 표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제 목

필 자
이 태 정

본 문

(필자 정보: 소속, 이메일)
(한양대 사회학과, 123@4567.890)

1. 국내문헌인 경우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정체성의 정치학』
홍태영, 서강대출판부, 2011, 400쪽.

2. 번역서인 경우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서 제목, 저자, 출판사, 000pp.

예: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찾아서: 사회의 재창조』
조너선 색스 지음, 서대경 옮김, 말글빛냄, 2009, 520쪽.
The Home We Build Together, Jonathan Sacks, Continuum, 272pp.

3. 해외문헌인 경우

제목(이탤릭)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수

예: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Mae M. Ngai,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400pp.

4. 목차 표기 방법(지난 호에 기준해서 수정)

<서평>

책 제목, 저자.
필자 ----------페이지수
예: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Mae M. Ngai. 권은혜 ---------- 00

『정체성의 정치학』, 홍태영. 박 단 ---------- 00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